第238回國會 (臨時會) 教育委員會會議錄 第 2 號(附錄)

國 會 事 務 處

日 時 2003年4月14日(月)

場 所 教育委員會會議室

【서면질의·답변서】

(질의서)

○尹景湜 委員

(교육인적자원부)

충남 예산 보성초등학교 사태와 관련하여

먼저 교육계의 분열로 인해 운명을 달리한 예산 보성초등학교 고 서승목 교장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에게 애도의 뜻을 표함.

□사태 현황

3월 3일 진모 교사 정식 출근

3월 18일 진교사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에 성 차별, 교권침해 신고

3월 20일 진교사, 사직서 제출, 충남도교육청과 전교조 홈페이지에 같은 내용 신고, 전교조 충남지부 예산지회 진 교사건 접수

3월 21일 전교조 예산지회장 보성초 방문, 서 교장과 30분 면담

3월 24일 전교조 충남지부 간부 보성초교 방문, 항의

3월 26일 전교조, 서 교장을 사무실로 불러 '교장 교감 연서명 사과' 요구

3월 27일 진 교사 "보성초교에서 일하겠다" 서 교장과 통화

3월 29일 서교장, 진 교사 임명장 우편으로 발송

3월 31일 전교조 충남지부 진 교사건 보도자료 배포

4월 1일 진 교사 출근, 3학년 담임으로 근부 시작, 인터넷 오마이 뉴스 진 교사건 보도

4월 4일 서 교장, 노모 집 옆에서 자살

□질의내용

○먼저 전교조에서는 이번 사건을 학교현장의 부당한 관행을 시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교장단 회의의 억압적인 분위기가 불행한 사고를 불러 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반면 한국교총은 전교조의 월권행위, 불법행위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본 사건은 '기간제 교사'의 운용문제, 교육현장에서의 교장·교감·교사·학부모 등 교육당사자 간의 입장차이를 조율할 수 있는 교육인적자원부 기능의 부재, 학교장의 권한기준 및 리더십 구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사건으로 생각됨.

○먼저 교육유관단체의 갈등해소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책임을 묻고자 함. 먼저 장관은 최근 서승목 교장선생님 사건 이후 한국교총과 전교조의 홈페이지를 방문한 적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람. 현재 양대 교원단체의 반목은 극심해서 서로 간에 타협과 양보가 아닌 투쟁일변도로 변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그동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구체적인 실례를 밝혀 주시기 바람.

○천안 예산 보성초등학교의 사건 이후 이러한 교단의 분열은 전교조와 한국교총의 분열을 넘어 학부모협의회와 학교운영위원회, 교장협의회 등으로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음. 장관은 이러한 교육유관단체들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것이 교육행정을 펼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이러한 대립을 감소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들을 구상 중에 있는지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람.

○다음으로 초등교원의 '기간제 교사'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함. 오늘 보고자료 p10에 의하면 금년 3300명의 교사가 부족하여 기간제 교사와

교과전담 강사로 충원하고 있으나 정부의 대책은 내년에 2500명의 특별편입생이 교육감 추천으로 배출되어 04년부터 부족현상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함.

○그러나 2004년이 되어도 교사부족 현상이 해소되지 못하고 다소 완화될 뿐임. 교육인적자원부가 파악하고 있는 교사 부족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러한 문제가 몇 년간이나 계속되고 있는데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기간제 교사의 문제는 당초 여교사의 출산휴가나 휴직 등으로 발생하는 일시적인 교원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도입됐으나 무리한 교원정년 단축으로 인한 교원 부족현상과 학급당 학생수를 35명 이하로 줄이기 위한 무리한 '교육여건 개선사업'의 결과로 판단됨. 장관은 교사부족이 명백한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리하게 땜질식으로 사업으로 진행하게 된 경위와 직접적인 문제 해결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기간제 교사는 시·도 교육청에서 일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별로 개별 계약하기 때문에 정규교사에 비해 근무조건이 매우 불리한 것으로 알고 있음. 본 위원의 이러한 견해에 대한 장관의 생각과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금번 보성초등학교 진모 교사의 경우 중등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지만 일반정교사와는 달리 초등교육에 대한 연수를 전혀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기간제 교사의 경우도 학생의 이해도와 수업 방법 등에 대한 연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교육인적자원부의 지방대학 육성 정책과 과련하여

오늘 보고자료에서 지방대학 육성은 거의 알맹이가 없음. 'BK21 사업'과 산업대학 육성을 지방대학육성과 연계한다는 취지로 이해되는데 심지어 교육부 내 지방대학 육성 전담부서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장관은 교육부 내에 지방대학 육성 전담부서를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설치·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람. 또한 책임자는 어느 급으로 할 것인지 향후 활동목표, 활동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려 주시기 바람.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지방대학 육성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은 사후약방문처럼 시기적으로도 늦고 원인에 대한 규명보다 사후 대책에 그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됨. 양적으로 다수를 차지하는 지방대학의 육성은 건전한 국민화합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발전의 최대관건이라 할 수 있음.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방대학은 정원미달과 폐교의 위기가 가속화 되고 있음. 장관은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에 대한 해결책은 어떠해야 한다고 보는지 밝혀 주시기 바람.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지방대학육성에 대한 대책은 단기적·형식적 처방과 장기적·실질적 처방이 있을 수 있다고 봄. 단기적·형식적으로는 대학과 기업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 취업률을 높이고 대학에서는 기업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조정하는 것임. 장기적·실질적 처방으로는 대학 자체의 역량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임. 이는 획기적인 수준에서의 연구비 지원 조치로 가시화 되어야 할 것임. 문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방대학 육성정책을 세우면서 단기적·형식적인 부문에서 치중하고 있다는 것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또 하나의 문제는 국립대학 육성에 대한 방향의 문제임. 국립대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기초학문, 소외된 학문, 돈이 많이 드는 학문,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학문에 집중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람.

(대한민국학술원)

1. 학술원 정원 150명 편성과 분과 편성에 관련하여

먼저 대학민국 학술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는 대한민국 학술원에 경의를 표함. 학술원법 제4조에 의하면 본 학술원의 회원은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술 연구의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로서 학술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자 혹은 학술연구의 경력이 30년 이상인 자로서 학술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부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회원의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회장이 소집토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총회를 거치지 못함으로 해서 최고영예인 학술원 회원에서 결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특히 지난 3월 14일에도 임시총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도 결원이 무려 10인이나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람.

학술원 회원은 150인으로 학술원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며 총 11개 분과로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학술발전에 공헌이 큰 분을 회원으로 모심에 있어 150인이라는 인원제한은 사실상 종신제로 운영되는 학술원에서 신규회원을 모시는데 큰 장애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본 위원의 이러한 견해에 대해 학술원의 입장과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또한 11개 분과로 운영되는 것은 발달하는 학술분야의 세부화에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됨. 이러한 견해에 대해 학술원 사무국장의 견해와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2. 학술원의 세미나 정책토론회 개최 활성화와 관련하여

오늘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학술세미나는 매년 5월, 정책토론회는 매년 1월 각각 1회 개최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학술원 회원의 오랜 연구경륜과 뛰어난 학식을 살려 우리나라 학술발전에 기여하고 특정분야에 대한 정부의 정책토론 및 정책건의를 한다는 기본적인 사업취지에 크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학술세미나와 정책토론회 개최를 보다 빈번히 하여 학술원 회원들의 참여를 높임과 동시에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정책입안에 기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본 위원의 이러한 판단에 대한 학술원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람.

(국사편찬위원회)

1. 국사편찬위원회의 정원운영과 관련하여

먼저 한국사연구의 심화와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사편찬위원회에 경의를 표함.

현재 국사편찬위원회의 정원 79명에 현재원 81명으로 운영되고 있음.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별도정원으로 파견과 휴직 1인이라고 하나 정원 외에 2인을 현재원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움.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보고서 작성시 실무진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원관리에 대한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2. 한국문화사(한국사 후속사업) 편찬과 관련하여

오늘 보고된 자료 p5에 의하면 한국문화사 편찬산업은 2003년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지 않아 자체 사업비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함.

위원장은 2003년 신규사업에서 본 사업이 반영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밝혀 주시고 이러한 사업을 자체 사업비로 추진함에 있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람. 또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소요경비를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이러한 경비의 조달재원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람.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본 사업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6년간에 걸친 장기사업으로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사편찬위원회의 홍보, 사업계획 등에 있어 원활한 업무수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 위원장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람.

(교원징계재심위원회)

1. 교원징계재심위원회 위원 정원운영과 관련하여

현재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상임위원 각 1명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토록 규정되어 있음.

이는 지난 98년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시 기존의 5명에서 7명으로 증원된 것으로 알고 있음. 운영 중인 위원 현황을 보면 5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당초 7인 이내로 한 취지가 무색해 지고 있음. 7인으로 상향조정할 때는 분명히 위원회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현재 5인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면 이러한 직제의 변경은 불필요했던 것으로 파악됨.

위원장은 대통령령까지 개정하면서 변경한 7인의 위원이 5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유를 자세히 밝혀 주시고 향후 계획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람.

2. 재심청구사건 인용률과 관련하여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접수 및 처리내역을 보면 99년 60%에 이르던 인용률이 2000년 49%,

2001년 46%, 2002년 45%로 점차 낮아지고 있음. 위원장은 이렇게 재심청구사건 인용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람.

재심청구사건에서 인용률이 낮아지면서 징계처분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은 국·공·사립학교의 교원들이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믿지 않게 되는 경향이 발생하고 있음. 교원징계재심위원회는 설치목적에 입각해서 교원의 권익옹호 차원에서 재심을 하여 인용률을 높임으로 해서 교원들에게 신뢰를 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본 위원의 이러한 견해에 대해 교원징계재심위원회 위원장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람.

(국립특수교육원)

1. 초·중등 특수학급 설치교 교장의 통합학급 연수와 관련하여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03년 초등 특수학급 설치교 교장 직무연수는 3기 221명, 중등은 1기, 82명에서 연수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총 대상인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비율인지 밝혀 주시고 통합교육 활성화에 이러한 정도의 연수를 실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는지 밝혀 주시기 바람.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통합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초·중등 일반학교 관리자과정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특수교육, 통합교육에 대한 이해가 적정수준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본 위원의 이러한 견해에 대한 국립특수교육원장의 생각과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람.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까지 통합학급 교사과정에 총 8기에 걸쳐 737명, 통합학급 교사 3기에 걸쳐 226명 연수를 추진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통합학급의 교사, 관리자, 전문행정 과정에서 연수가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됨. 이에 대한 국립특수교육원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람.

2. 특수교육원 청사이전과 관련하여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특수아동의 출현율은 2.7%로서 취학연령 800만 명 중 22만 명으로 추정됨. 그 중 취학 중인 학생은 5만 5000여명에 불과한 것이 사실임. 산술적으로 전체교육예산의 2.7%가 확보되어야 하지만 실제로 특수교육관련 예산은 2%에 불과하며 교육인적자원부에는 2007년까지 3%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실정임.

본 위원의 판단에 의하면 특수학급에 교실이 부족하고 화장실 편의시설이 안 되어 장애아동들이 학업이 취학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특수학급 200개를 신설할 수 있는 규모의 예산을 들여 특수교육원을 확대이전하는 것에 대해 쉽게 납득하기 어려움. 본 위원의 이러한 견해에 대해 국립특수교육원장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람.

본 위원의 견해로는 특수교육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여건하에서 국립특수교육원의 이전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특수학급의 신설과 편의시설의 강화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이에 대한 국립특수교육원장의 의견과 이전 계획을 향후 전면적으로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람.

(국제교육진흥원)

1. 국제교육진흥원의 홍보활동과 관련하여

국제교육진흥원의 현재 홍보활동 강화방침을 보면 본관 입구 홍보판 설치, 원내 홍보자료실,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전자우편 주소 등을 밝히고 있음.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이러한 노력은 홍보활동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미약한 것으로 생각됨. 본관 입구에 홍보판을 세운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원내 홍보자료실,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전자우편 주소가 실제적으로 홍보자료가 된다고 보는지 자세히 밝혀 주시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어느 정도의 홍보가 이루어졌는지 추후 상세히 파악해서 밝혀 주시기 바람.

국제교육진흥원에서는 또한 홍보의 범위와 확산 효과가 큰 일간실문, 공중파방송, 교육관련 신문에 대해 보도 협조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일간신문과 공중파 방송의 경우 막대한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러한 홍보가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본 위원이 이러한 견해에 대해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생각과 함께 지금까지 홍보는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람.

○李在禎 委員

(교육인적자원부)

1. 최근의 교단갈등에 대하여

□사건의 원인과 의미

지난 4월 4일 발생한 서승목 보성초등학교 교장의 자살 사건은 교육관련 당사자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큰 충격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학교 현장의 책임자인 교장이 교내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해 자살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참으로 슬픔과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우리는 교육계 내부의 문제로 교사나 학생들의 죽음을 여러 차례 경험했지만 이번 사건처럼 커다란 사회적 파장과 논란을 불러일으킨 적은 없었다.

우리 모두 차분하게 이번 사건을 정리해 보면 이번 사건은 그 간에 교육계 내에 잠복해 있던 교원단체, 교장 등 행정책임자와 교직원노조, 학부모-교원노조 간의 갈등과 반목이 집중적으로 분출되면서 농촌지역 초등교사 부족을 보충하기 위한 기간제 교원의 임용의 확대로 인한 문제와 함께 학교현장에 상존하는 세대 간, 직급 간의 상호 이해부족에 따른 갈등의 문제로 인해 이처럼 큰 파장을 일으켰다.

□사건의 파장과 해결방안

이번 사태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관점을 기간제 교사 및 교원단체와 교장 간의 갈등에 국한하지 않고 교육현장의 시스템이 가지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학교는 우리가 처음 접하는 사회화의 통로이며 세대 간의 갈등이 늘 공존하는 곳이다. 나이든 교사와 젊은 교사, 선생님과 학생들 간의 갈등이 그러하다 거기에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교육당국과 현장에서 학생들을 직접 대면하는 교사들과의 갈등도 주요한 축을 이루고 있다.

매우 중요하면서 간과되고 있는 것은 이번 사건의 쟁점이 기간제 교사의 항변과 교장의 죽음으로 덮어버리는 사이에 아이들의 가슴이 멍들고 있다는 점이다. 중요한 것은 극한적인 갈등과 대결을 통한 책임의 유무에 대한 추궁만이 아니라 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가에 대한 근본적 원인을 파악해서 진정으로 건강한 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교육주체 간의 상호이해와 신뢰가 없이 극한의 대결과 갈등을 통해서 일방적인 승리만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육이 아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단위학교를 이끌어가는 교장의 교육철학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고민할 때이다. 지시와 간섭보다 조정하고 협의하며 조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철학을 가지고 아이들과 동료 교사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하다.

이번 사태의 최대 희생자가 어린 학생들이어서는 안 된다. 교실에서 선생님이 혼나는 것을 보았고 교장선생님이 자살로 세상을 떠난 것을 본 아이들의 상처를 한 번이라도 생각하자는 것이다. 어른들에 의해 아이들이 상처받으면 미래가 어두워지고 아이들의 피해는 더 커질 것이다.

아이들을 제대로 바라보기 위한 따뜻한 시선이 만들어지면서 한 교장의 죽음을 값지게 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번에 우리 교육계가 겪는 불행한 사건이 우리 교육발전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기 바란다.

[질의1] 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가 생각하는 현재의 교단갈등의 원인과 근본적인 치유의 방법은 무엇인가?

[질의2] 정작 해당학교 학생들이 수업을 받지 못하는 등 1차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에 대해 조속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의3] 기간제 교원의 처우개선과 더불어 현재 항시적 부족사태를 겪고 있는 농어촌 지역 초등교원 수급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이 강구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기 바람.

[질의4] 현재 교총과 전교조/한교조는 각각 별도로 교육인적자원부 및 해당 시·도 교육청에 대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음.

이러한 단체교섭의 결과가 각 단체 회원에게만 구속력이 있는가 혹은 비회원인 모든 교원에게 적용되는가?

(모두에게 적용된다면) 굳이 각각의 단체와 개별적인 단체교섭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각 교원단체들의 희망에 따라서 분리한다고 답할 경우) 그러나 이처럼 분리된 단체교섭이 교원단체 간의 분열을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함. 각 단체가 별도의 교섭을 희망하더라도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계의 화합과 안정을 위해 통합적인 단체교섭에 앞장서야 하는 것이 아닌가? 혹시나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원단체들을 '분리-지배'하여 교원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을 미리 방지하려는 의도는 없는가?

이 기회에 교원단체 간의 안정과 화합을 위해 단체교섭 창구의 통합을 주도할 용의는 있는가? 있다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리한 후 서면으로 보고해 주기 바람.

[질의5] 이번 사태의 전개과정에서 드러나듯이 현재 우리 교육계 내에는 교원단체 간 그리고 각 교육주체 간의 분열과 갈등이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음. 이를 조정하기 위한 통합적 조정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인적자원부가 이미 추진의사를 밝힌 「교육현장안정화대책기획단」의 구체적 역할과 위상은 어떻게 상정하고 있는지? '갈등과 대립에서 신뢰와 협조의 장으로 방향전환(p.53)'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2. 비전임 교수(시간강사)의 현황과 대안

□비전임 교수(시간강사) 현황

지난 3월 말 본 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한 학술단체협의회 주최의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의 논의를 보면 이제는 강사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의지마저 대다수의 시간강사들에 의해 조소받고 불신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비전임 교수(시간강사) 문제는 우리 대학사회의 음지라고 할 수 있다. 대학 강의의 절반 이상을 시간강사에 의존하면서도 시간강사들에게는 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도 부여되지 않고 있고 최소한의 생활을 위한 급여 수준도 보장되지 않고 있다.

시간강사의 열악한 지위와 경제적 조건은 학문후속세대의 원활한 양성을 어렵게 하여 대학의 장래를 어둡게 할 뿐 아니라 대학 사회 내에서 불신과 갈등 유발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일반 사무나 단순노동과 달리 강의 준비, 시험문제 출제, 평가 등에 수많은 시간이 투여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간강사료는 물가인상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비전임교수(시간강사) 처우개선 방향

비전임 대학교원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몇가지 처우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시간강사 안정적 연구 활동 지원
- －현재 비전임 교수(시간강사)들을 대상으로 일정한 평가절차를 통해 1년 단위의 계약을 기본으로 하여 일정 수준 이상(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급여를 보장하는 강의전담교수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 －현재 많은 대학에서 진행 중이며 학술진흥재단에서도 진행 중인 연구교수제의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프로젝트 교수 등 다양한 차원에서 안정적인 연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중장기적으로는 시간강사라는 제도를 없애고 다양한 형태의 안정적 연구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2) 신분보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검토
- －현재 법적·제도적 보장도 없이 대학 강의의 절반을 담당하고 있는 시간강사들에 대한 신분보장 대책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 －더불어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 노무현후보의 공약이기도 했듯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장 혜택에 대한 제도화를 위한 검토작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대학강사지위에관한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주장이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즉 대학교원 임용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목표가 될 것이다.

3)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
- －학문후속세대의 양성과 학문의 질적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 －학술진흥재단의 정책도 학문후속세대의 건전한 육성이라는 측면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학진 연구비의 전반적인 재검토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기금조성과 같은 중장기적 대책이 고려되어야 한다.

4) 대학 전임교원 확보율의 획기적 개선
- －현재 국·사립대학의 교원 확보율은 50～60%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며 대학원 전임교수는 전무한 상황이다.
- －따라서 각 대학이 전임교원의 확보율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국립대학의 경우 2002～2003년 2년 동안 전임교원을 2000명 증원하는 계획이 실행 중이다.
- －이런 추세에 맞추어 사립대학의 경우도 교원 확보율을 높일 수 있게 하는 행·재정적 지원 및 감독이 절실히 필요하다.

5) 비전임교수(시간강사)의 급여체계 개선
- －현재 강의시수에 의해 지급되는 급여로는 도저히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급여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 －따라서 강의시간으로 지급을 하되 강의 준비, 강의 평가 등을 고려하여 3시간 강의의

경우 9시간 강의한 것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하며 방학 중에는 연구를 위한 최저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이 도입되어야 한다. 사립대의 경우 이에 따른 재정압박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질의1] 법적·제도적 보장도 없이 대학 강의의 절반을 담당하고 있는 시간강사들에 대한 최소한의 신분보장 대책으로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장 혜택에 대한 제도화를 위한 검토작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의 견해는 어떠한가?

[질의2] 장기적으로는 시간강사라는 제도를 없애고 다양한 형태의 안정적 연구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교육인적자원부가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있는지?

[질의3] 현재의 강의시수에 의해 지급되는 급여는 강사들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급여체계의 개선이 필요함. 사립대의 경우 이에 따른 재정압박이 있을 경우 국가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3. 학교급식 개선방안

1) 학교급식의 현황 및 문제점

2002년 12월 기준으로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등 1만 363개 학교 중 96%에 해당하는 9989학교에서 655만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이 실시되고 있다.

－초등학교 100%, 중학교 89%, 고등학교는 98% 수준.

1981년 학교급식법의 제정 이래 9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된 학교급식은 짧은 기간에 크게 확대되어 학생들의 책가방 무게를 줄이고 학부모들의 도시락 준비에 따른 번거로움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학교급식의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운영 확대에서 드러난 문제들로 인해 '교육의 일환'인 학교급식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급식재료의 사용

－학교급식 운영이 대다수 학생 또는 학부모의 의사와 무관하게 운영

※서울시의 경우 중학교 296개교 전부, 고등학교 296개교 중 257개교가 위탁급식 실시

－식중독환자의 대부분이 학교급식에서 발생(01년 70%)

※3월 29일 현재 12개 중·고교생 1533명 모두 위탁급식에서 발생

－이와 같은 문제들로 인해 학생들이 학교급식을 기피하여 도시락을 지참하거나 학교 인근에서 인스턴트식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발생하고 있다.

2) 학교급식 운영 개선 방안

□위탁급식 관련

위탁급식의 경우 현행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해당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업체를 선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실제로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초기 시설 투자비를 위탁업체가 부담하고 있으며 위탁계약기간이 만료하면 투자한 시설설비 일체를 학교에 기부체납하는 방식으로 반납하고 있음.

이에 따라 위탁급식업체는 평균 2~3년 정도의 계약기간 내에 투자비용을 회수하고자 하는 까닭에 급식의 질 저하를 야기하고 있다. 위탁급식의 경우에도 시설투자는 원칙적으로 국가에서 부담하고 급식업체는 전문 급식경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정비가 시급함.

위탁급식업체의 선정에 대한 기준과 선정 절차가 불투명하며 과도한 하청 조달이 발생하여 식중독 사고발생의 주요 원인이다. 따라서 식중독 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서 위탁급식 업체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본다.

장기적으로 학교급식은 직영급식체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는 서울시 교육감, 경기도 교육감과 협의하여 현행 위탁급식의 직영화 전환 방안을 구체적으로 합의하여 그 결과를 보고해 주기 바란다.

□최저가격 입찰제 관련

식료품은 그 품질의 평가가 감각적인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학교급식의 경우에는 급식 당일에 배달받아 검수, 조리, 배식이 당일에 완료되어야 한다.

따라서 최저가격으로 입찰된 경우 최상의 식료품을 기대하기도 어려우며 검수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어도 당일 급식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다른 식품으로 대체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식자재는 최적가격을 산정하여 합리적으로 공급받

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역 특성 고려한 지역 특산품 활용/표준가격 설정/

[질의1]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고 위생에 따른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위탁급식에서 직영급식으로 순차적으로 전환함에 더불러 학교급식을 전담해서 관리할 별도 기구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입장은?

[질의2] 학교급식에 대한 HACCP(해썹 :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의 현황 및 조속한 확대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기 바람.

[질의3] 현행 학교급식의 수준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의 최저입찰제를 폐지함과 아울러 그 대안으로서 최적입찰제 혹은 지역특성을 고려한 “표준 가격” 제시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경우 추가적으로 발생할 비용 증가분 및 그 조달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보고해 주기 바람.

4. 지방대학의 발전방안

□지방대학 위기의 진단

현재 발생하고 있는 지방대학의 위기의 원인은 외부적, 내부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본다.

현재 지방대가 처한 가장 급박한 문제는 고졸 학생 수의 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압박이다. 지난 2002년 1만 2897명에 달했던 미충원의 86.5%가 지방대에서 발생했고 수도권 대학에 편입을 준비하는 지방대생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학생 부족은 대학 경영난과 교육여건 악화, 투자의 중단으로 이어져 지방 사립대학의 사활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이같은 악순환의 고리에서 지방 사립대학들은 최초이자 최대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

IMF이후 지방에 기반을 둔 기업들이 대거 파산하거나 재정난에 시달리면서 지역경제의 기반이 약화되면서 취업의 기회가 급속히 줄어들고 이는 지방대생들이 지역을 떠나는 1차적 원인이 되고 있다.

고등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인적자원부도 지금까지 대학의 자율성 제고보다는 통제·감독 위주의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대학이 자생력을 키우지 못하는 원인이 되어왔다.

□지방대학의 발전 방안

1)산학연 연계체제의 구축

지방대학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교육정책이라는 단선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다양한 부문의 정책들이 상호연계되어 입체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볼 수 있다.

지방대는 지역 균형발전의 축으로서 지역별 산업특성을 뒷받침하는 연구거점으로 성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산·학·관 연계체제의 구축 즉 지역산업체, 대학, 지자체의 협력 및 제휴를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지방대학의 연구소에 지원하는 연구개발(R&D)과 대학내 창업보육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하며 지방대도 교육의 세계화를 통해 시장개척에 나서고 세계적인 대학들과 경쟁해야 한다.

2) 평생학습중심으로의 전환

지방대학 특히 지방 전문대학들이 지역 평생교육센터의 중심기관으로 그 기능을 전환하여야 한다. 즉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정규 취학 희망자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고 운영도 학점당 등록제 등의 방식으로 활성화한다.

3) 지자체의 역할 강화

지방자치단체도 지방대학을 육성하는데 적극 참여해야 한다. 지방대학이 살아야 지역이 살고 그 지역이 살아야 지방대학이 사는 공생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각 단체별 학술진흥기관을 설립하고 지역 대학들의 연구와 학술행사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야 한다. 각 자치단체별 학술진흥기관은 한국학술진흥재단과 달리 지방의 특색과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연구 및 학술행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광역자치단체가 중심이 돼 지방대학, 지역 기업들이 공동으로 인력을 관리하는 ‘인재관리지역협의회’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캠퍼스타운 조성에 적극 협력해 교육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환경에서 면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은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방안이다.

4) 한시적 채용목표제 도입

지역에서 필요한 공무원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지방대 출신으로 채용할 필요가 있다. 시험점수

가 높은 것보다 지역을 더 잘 아는 것이 지방행정에 더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해당지역 출신 졸업생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 세금의 감면, 기술개발 자금지원 등 각종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지방대생의 취업률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질의1] 지방대학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과 아울러 이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의 입장을 밝혀 주기 바람.

[질의2] 고등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지금까지 대학의 자율성 제고보다는 통제나 감독 위주의 정책을 실시하여 대학이 자생력을 키우지 못하는 원인이 되어 온 측면이 있다. 지방대학들이 자발적인 자구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구체적인 노력과 실행방향은 무엇인지 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에게 묻고자 함.

5.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관련

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단국대 부도사태를 경험하면서 대학들 사이에서 '무너질 수도 있다' 위기의식이 팽배해졌고 재정 확보가 대학의 존립을 결정짓는 절대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손쉬운 추가 재정확보의 방안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컴퓨터·어학강좌를 주로 하는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이 대거 설립되었다.

2002년 말 현재 전국 대학에는 328개 평생교육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개설된 교육과정은 6500여개, 수강인원은 32만 7000여명에 이르고 있다.[붙임]

그러나 문제는 개설된 대부분의 강좌들이 '학원 같다'는 지적을 면하지 못할 정도로 질적인 차별성이 없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인구밀도가 높은 캠퍼스에서 교수와 학생들에게 공간부족의 불편함을 가중시켜 본래의 면학분위기를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결국 장기적인 국가경쟁력 확보의 측면에서 대학 재정난의 해소를 위해서는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전제로 한) 국가차원의 장기 저리융자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개별 대학의 책임과 역할도 여전히 중요하다 재정운용에 도움이 되지도 않는 부실 재단을 무리하게 유지하고 있거나 이월·적립금만을 축적하는 행태는 개선돼야 한다.

특히 수준 높은 고등교육을 위한 조건인 '재정확보' 방안이 그 본말이 전도되어 오히려 교육환경을 침해한다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심각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대학들이 수익사업에 앞장서서 교육이나 연구를 뒷전으로 한다면 대학의 존재 이유는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질의 1] 각 대학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원들이 평생학습의 이념 구현 및 지역사회에 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기본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가? 유사한 과정을 영리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일반 학원과 어떤 차별성을 가지는지?

[질의 2] 손쉬운 재정확보 수단으로 이용되어 원래의 평생학습 취지를 벗어나고 있는 현재의 교육원 운영에 대한 적절한 개선책을 마련하여 서면으로 보고해 주기 바람.

○金敬天 委員

(교육인적자원부)

첫째, 업무보고 19쪽「지방대학 육성 전담부서」설치·운영 관련해 실시 시기 및 설치목적 등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업무보고 30쪽 '경쟁력없는 대학에 대한 퇴출' 관련해 퇴출대학의 기준과 퇴출시기 등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업무보고 30쪽 '민간자격 공인제도 활성화 및 자율 운영 능력제고'와 관련해 각 지방 교육청별 민간자격 공인화 도입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업무보고 51쪽 '사학비리 전담 감사기구 설치'와 '사학 분쟁조정위원회(가칭) 설치 관련해 설치시기와 설치 기준, 이의 인적구성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업무보고 10쪽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관련해 서울의 인구집중 지역의 학교 부지 확보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貞淑 委員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 정책 부재(不在)

1. 청소년사이트 성인광고 '단속 사각'

최근 청소년 대상 사이트나 커뮤니티 게시판에 노골적인 성인 사이트 광고가 무차별적으로 게재되고 있지만 해당 법규가 미비해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본 위원이 게임업계 등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성인사이트 광고게시물은 스팸메일[1]처럼 무차별적으로 광고를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주는 프로그램이 개발돼 개당 30만~50만 원에 거래되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한 두 시간 내에 수천 건의 게시물을 불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올릴 수 있다.

질의 1) 성인사이트 광고 게시물은 공고 제목을 클릭할 경우 바로 해당 성인사이트로 이동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이들 게시물을 처벌하려면 노골적인 성행위 묘사와 같은 '음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이들 게시물은 단순 '광고'에 해당해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 정보통신부 입장이다.

물론 지난 2월 19일에 발효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음란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더라도 청소년에게 유해 매체물 광고를 전송할 경우 형사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스팸메일이나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과 같은 '1대 1 전송'에 국한한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고 공개적인 광고물 게시는 대상이 되지 않고 있어 청소년 댓아 사이트나 커뮤니티 게시판은 성인사이트 광고게시물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문제를 정보통신부나 청소년보호위원회에만 떠넘길 문제가 결코 아니라고 본다. 교육인적자원부 부총리는 이러한 성인광고 단속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답변 바란다.

질의 2) 현행 청소년보호법 제20조에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옥외 광고물이나 각종 매체의 광고물이나 각종 매체의 광고를 청소년이 접근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 전시하거나 배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역시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 문제는 1년 전부터 지적되어 온 사안인데도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는 나서지 않고 있다.

청소년보호법 제20조에서 광고선전물의 제한방법·장소, 기타 광고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대통령령에 인터넷 게시판을 광고선전물에 추가하면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청소년보호위원회와 협력하여 인터넷게시판이 광고선전물에 포함되도록 촉구해야 한다. 이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의 답변을 바란다.

※자료요청

1) 초·중·고등학생이 운영 중인 청소년사이트 현황(시·도별, 유형별)

2. 기숙학원 관련

무등록·허위광고 등 불법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전국의 기숙학원들에 대한 단속이 그동안 방치되어 왔다. 얼마 전 경기도 지방경찰청이 경기도내 8개 기숙학원에 대한 수사를 벌여 안양 E학원 외 2개소에 대해 소방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광주 H학원 등 6개소 11명에 대해서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경기도 교육청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

※불법내용

1) 안양 E학원 외 2개 : 기숙시설을 숨긴 채 일반학원으로 허위등록/학원법 제6조 위반 2) 광주 H학원 : 입시학원으로 등록한 후 '산후조리원'으로 사용한 3층 건물에 임대해 1, 2층에 10개의 기숙시설을 설치하여 학원생 98명을 숙식시킨 혐의

기숙학원 문제는 앞으로 근본적인 해결을 모색해야 할 사안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위원이 그동안 조사해온 내용들을 중심으로 질의하고자 한다. 자칫하면 여러 가지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의 명확한 답변을 바란다.

질의 1) 기숙학원이 왜 불법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모호하다. 현재 전국에서 부유층이 '사(私)교육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기숙학원이 불법인지 아니면 합법인지 교육인적자원부의 명확한 입장을 먼저 밝혀 주기 바라고 불법이라면 불법의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혀 주기 바람.

질의 2) 1986년부터 2001년까지(설립일자 기준) 교육인적자원부가 인가해준 26개 기숙학원(진덕학원 외)은 교육인적자원부의 공교육 취지와 전면 배치되는 정책결정이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한다. 당시 기숙학원들에 대한 인가기준과 절차는 무엇이었는지 답변 바란다.

그리고 인가해준 기숙학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자 1990년 교육인적자원부는 '기숙학원 신설불허 방침'을 세웠는데 그 후에도 기숙학원 신설을 허가해 준 사실이 있는지 밝혀 주기 바라며 또한

1) 스팸메일은 무차별적으로 발송되는 광고성 e메일을 말하는 것으로 컴퓨터 바이러스 해킹 등과 함께 정보화시대의 대표적인 역기능의 하나로 꼽히고 있음.

이미 인가한 기숙학원들을 없앨 명목으로 '기숙학원운영조건'을 발표한 바 있는데 내용이 무엇인지도 답변 바란다.

※기술사 기준, 증축·명의변경불허, 교실면적(1명당 2평) 등으로 추정됨.

질의 3) 그동안 기숙학원들에 각종 불법운영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의 단속이 너무 소홀했다. 1990년 이후 기숙학원 관리감독 관련 지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어떤 내용들인지 답변해 주기 바란다.

※자료요청

1) 1990년 이후 기숙학원단속지침 관련 공문

2) 전국 시·도교육청의 기숙학원 단속 결과 (경상남도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 포함)

질의 4) 본 위원이 지금 촬영된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구(舊) 수산초등학교 부지에 설립된 '월악 종로학원'[2]의 경우 관리감독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먼저 '공유재산 대부계약서'상에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대부기간에 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3]에도 불구하고 기숙사를 신축하였다. 이는 폐교대부자산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앞으로 폐교자산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방안을 답변 바란다.

질의 5) 월악 종로학원과 제천교육청간의 관련서류를 살펴보면 월악 종로학원이 계약서상의 의무조항을 위반하면서까지 기숙사 신축공사를 시작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폐교를 임대해 주면서 제천교육청이 불필요한 서류를 발급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 서류가 바로 '토지사용승락서'와 '각서'이다.

대부 중인 폐교에 대해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해줄 경우 폐교를 빌린 사람이 이 서류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각종 건물 신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4] 월악 종로학원의 경우가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한다. 앞으로 폐교대부행정에 있어서 불필요한 서류발급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인적자원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 바란다.

질의 6) 월악 종로학원의 경우 입찰과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폐교를 매각하기 위해 공개경재입찰을 시작하기 이전에 이미 월악 종로학원으로 낙찰이 예정되어 있었다. 이의 증거로는 첫째 '대부계약'이 폐교매입을 전제로 이루어졌고[5] 둘째는 매입 전에 기숙사 신축공사가 시작되었으며[6] 셋째는 단독입찰이었다는 점이다.[7]

앞으로 폐교에 대한 공개경쟁입찰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청이 가능한 좋은 가격으로 폐교 매각을 이끌어내는 경영마인드를 지녀야 한다. 앞으로 폐교매각과정 투명성과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인적자원부 대책을 밝혀 주기 바란다.

※폐교매각과정 문제점 정리

1) 폐교매입전 임대기간에 기숙사 신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작함(2002. 7.)
   －현행법은 국·공유임대건물에 대해서는 일체의 구조 변경이나 증축 또는 신축행위를 불허하고 있음.
   －제천시 교육청은 이 학원에 대해 2002. 7. 16일 '토지사용승낙서'에서 '사용 승낙만 하고 증축은 불가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음.
   －'공유재산대부계약서'와 '각서'에도 기숙사 신축공사를 불허하고 있음.
2) 2002년 9월, 4개 기업이 응찰하였으나 '월악 종로학원'으로 낙찰됨.
   －2개 기업이 입찰에 응하지 않았고 1개 기업만 써냈음.

2) 월악 종로학원은 충북 제천교육청으로부터 정원 504명을 인가받았다. 이 학원이 들어선 충북 제천시 수산면은 인구가 약 400명에 불과한 소규모 마을이다.

3) 충청북도교육청과 유준석(월악 종로학원장)이 맺은 '공유재산 대부계약서' 제7조

4) 지방자치단테는 국·공유 대부토지에 대하여 건물 신축 또는 증축을 불허하고 있으나 교육시설의 경우 관계 교육기관의 증빙서류나 또는 불가피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증축허가를 해주고 있음.

5) 당시 계약담당과장과 면담에서 확인함(2003. 4. 14.)

6) 재천교육청이 받은 각서(2002. 7. 16.)를 살펴보면 '매입과정이 끝날 때까지는 기숙사 착공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이미 월악 종로학원에 매각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음. 또한 제천교육청 공문(2002. 9. 18. 임대재산 관리 철저 통보)을 살펴보면 월악 종로학원이 대부계약의무사항을 위반하고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 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7) 4개 업체가 입찰하였으나 '월악 종로학원'만 입찰가(7억 4200만 원)을 써내고 다른 3개 업체는 들러리 섬. 폐교의 당시 공식감정가는 7억 4184만 5360원이었음.

－기숙사신축공사 현장을 보고 3개 업체가 경쟁입찰을 포기함.
3) 제천교육청의 입찰공고기간이 30일이 아닌 17일에 그친 점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령에 30일 이상 공고 규정)

1990년 이후 설립된 기숙학원들은 대법원의 판례에서 '기숙학원 신설을 불허한다'는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이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렇다고 합법이라고 할 수도 없다. 법률가들도 저마다 해석이 달라 시·도 교육청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앞으로 교육인적자원부는 기숙학원을 양성화 할 것인지 아니면 전면 금지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고 현재 미비되어 있는 관련법 정비계획을 답변 바란다.

○朴昌達 委員
(교육인적자원부)

학교급식 식중독사고 건

지난달 26일, 27일, 31일 3일동안 서울·경기지역의 중·고등학교에서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로 15개 학교에서 1800여 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98년에 1300여 명에서 2001년 5200여 명에 이르기까지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환자는 4배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올해 들어서는 벌써 2500여 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달에 연속적으로 발생한 식중독사고는 98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사전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시작하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늘 불안했던 예고된 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급하게 시행된 학교 급식제도이기에 우리의 교육실정에 맞게 연착륙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하지만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계속되는 사고발생에도 사후약방문식 대처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계속된 사고 후 단 10일 만에 교육인적자원부의 후속조치가 나온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급식은 국가의 장래를 위한 투자이며 소득불균형 해소와 교육기회 평등을 위한 최소한의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사고로 식중독 환자의 수는 점점 증가하는 상황인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중독 사고 이후에 요즘 학교 풍속도가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식중독에 대한 두려움과 맛이 없으면서 머리카락과 벌레가 나오는 급식이 불안해서 점심을 아예 학교 앞 분식집에서 해결을 하거나 도시락을 싸 오는 학생이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식중독이 발생했던 학교에서는 아예 학교 내로 중화요리를 배달해서 먹는 실정입니다 .

이러한 상황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 부총리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이번 사고는 급식제도의 불합리한 구조, 일부 위탁업체의 비양심적인 이윤추구, 관리감독의 소홀과 관리기준의 애매함에서 발생한 예견된 인재라는 인식이 지배적입니다. 현재의 제도는 저가입찰제, 7000만 원에서 3억 원의 급식시설 투자비, 급식비의 65%의 원재료비 투입요구, 2~3년의 계약기간, 급식시설(조리실, 식당)의 경우 업체의 투자비로 만든 후에 학교로 바로 기부체납되고 있으며 학교에 지불하는 사용료(가스료, 전기료, 계약이행보증금, 공공부지사용 임대료 등)의 감면혜택이 전혀 없는 상황(직영의 경우 부담하는 비용이 낮음)에서 자연히 식재료비의 비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불합리한 제도와 소홀한 관리감독에서 업체는 재계약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2~3년 내에 투자비 회수와 이윤을 내기 위해서 이중장부를 사용하며 저질의 재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제도적인 모순과 관리감독의 소홀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현재 식품안전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시·도 교육감에게 관리감독의 책임이 위임되어 있어 관리 책임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제도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정할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10일 만에 발표한 서울시 교육청의 후속조치를 살펴보면 재발 방지를 위한 급식품 검수단, 모니터링 제도, 영양관리 실명제를 운영하고 현재 서울시의 중·고등학교에 원칙적으로 고수해 오던 위탁급식제도를 학부모 측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직영급식으로의 전환을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책이 사후에 발생할 식중독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2004학년도부터 현실적 적용 가능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고 답변 예상, 서울시 교육청 후속조치 내용에 포함)

98년부터 전면 시행된 급식제도가 시행 6년째인 올해까지 식중독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새로운 대책을 내놓았었는데 2004년도에 내놓을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입니까? 2004년도 내놓을 대책으로 앞으로 식중독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2002년도부터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이 시행되어져 현재 중학교 2학년까지 무상의무교육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학교의 경우 위탁급식제도에서 직영급식제도로 전환할 때의 비용을 학부모에게 전액 부담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3년간의 식중독 사고를 분석해 보면 서울시 교육청에서 고수해 왔던 위탁급식제도가 시민단체 및 학부모들이 원했던 직영급식제도에 비해 최고 6배가량 식중독 사고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시·도의 경우는 직영급식제도의 비율이 70% 이상인데 서울시의 경우에만 유독 중학교 100%, 고등학교 97%의 위탁급식제도를 고수해 오다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직영급식제도의 전환을 부분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이번 식중독 사고에서는 직영급식제도를 시행할 경우 사고 발생에 따르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위탁급식제도를 시행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인적자원부는 2003년 학교보건기본방향에서 2002년도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HACCP(해썹,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s)의 확대·실시로 식중독 발생이 크게 감소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선학교에서는 HACCP(해썹)의 실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며 적용상의 문제가 있어서 교착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식의 관리기준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현재 미국과 일본은 급식제도에서 자국의 농산물을 사용하는 제도를 시행(미국은 자국산 농산물 사용을 의무화, 일본은 보조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내 농산물 소비촉진과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자국산 농산물 사용제도가 필요한데 현재 교육인적자원부는 WTO협정에 위반에 따른 통상마찰의 소지가 있다며 급식법 개정보다는 농림부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WTO 예외조항을 이용하면 통상마찰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 사용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중·고등학교는 공공성이 강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것을 알기에 교육개방에 대한 1차 양허안 제출에서도 개방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초·중·고등학교의 급식제도도 공공성이 강하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급식제도는 충분한 예산확보의 부족과 사전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행되어져 현실적인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 부총리께서는 학교급식이 국가장래를 위한 투자라는 점과 미래세대의 건강을 책임지는 교육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고 신속하고 정확한 제도 마련으로 우리의 아이들이 급식으로 인해 학업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관련 내용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도입으로 인한 혼란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4월 1일 제2차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는 10일까지 입력항목을 대폭 줄이는 등 보완작업을 거쳐 11일부터 시행키로 결정했습니다.

회의 당시 ◇입력항목 대폭축소 조정 ◇보건영역 중 병력기록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부분 축소 조정 등이 제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4월 10일까지 최대한 보완하여 4월 11일부터 시행하되 위원들이 주장한대로 입력항목을 최대한 축소 조정하고 특히 보건 영역 중 보건일지와 관련한 처지, 투약, 상담 등의 영역과 병력기록과 관련한 사항들을 입력항목에서 최소한 삭제하는 등 최단기일 내 보완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외 학교 생활기록부 중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항목과 학생건강기록부 항목의 수정, 삭제 등은 전문가 협의를 거쳐 결정키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와 협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하였다고 하나 만에 하나 유출이 되었을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 할 것으로 봅니다.

국가인권위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 교원업무 경감과 관련된 세부업무를 제외한 교육인적자원부의 나이스 전반에 대한 정리된 입장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李揆澤 委員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의 지방직화에 대한 질의

지난달 대통령 소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 행정분과위원회에서 현재 대통령 또는 장관이 행사하는 교원에 대한 임용권을 교육감에게 이양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일반 행정학자가 주도한 이번 결정은 제2의 교원정년 단축 사태를 불러오지 않을까 심히 걱정됩니다.

특히 지난해 법 체계상 불합리하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교원사기 저하를 이유로 반대입장을 표명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의견을 존중하여 보류된 안건이 이제 와서 교원들과 아무런 논의없이 결정됐다는 것은 참여정부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결정입니다.

교원의 지방직화는 첫째, 교육자치제가 확고히 자리잡기 전에는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교원의 지위와 사기를 저하시켜 교직안정과 교육발전에 악영향을 줄 것입니다.

둘째,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교원의 보수 및 교육환경의 격차가 심해져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할 것입니다.

셋째, 지자체가 교원의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기간제나 계약제 교원의 임용을 확대할 우려가 있습니다.

넷째, 시·도 간 교원 인사교류가 막혀 별거 부부교사의 민원이 발생할 것입니다.

지난해 교총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지방직화에 98%의 교원이 반대했습니다.

현재 정년단축과 교원단체 간 갈등으로 교권이 땅에 떨어진 이 마당에 신분까지 지방직으로 전환한다면 교권은 땅 속에 묻힐 지경입니다.

이 점을 잘 헤아려 부총리께서는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 강력하게 철회의사를 전달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람.

식중독 발생에 대한 질의

최근 수도권의 위탁급식 중·고등학교 18개교에서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해 1754명의 학생이 구토, 복통, 설사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 중 120명의 학생은 입원 치료를 받아 학생들의 수업권에 상당한 피해를 주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국감에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수도권의 거의 모든 중·고등학교가 위탁급식을 하고 있으며 위탁급식이 직영급식에 비해 식중독 발생률이 3배 내지 6배나 높습니다.

이는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표한 결과와 일치합니다.

위탁급식이 직영급식에 비해 식중독 발생률이 높은 이유는 설비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해 값싼 저질의 식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위탁급식은 한 급식업체가 수십 개의 학교와 계약하고 동일한 식재료를 공급해 여러 학교가 동시다발적으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탁급식을 조속히 직영급식으로 전환하고 집단 식중독 발생시 위탁급식 업체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또한 업무보고에서 영양 및 위생관리 실명제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부총리께서는 실명제가 식중독 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보십니까?

본 위원 생각은 철저한 위생관리와 식중독 사고 업체에 대한 가차없는 퇴출만이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는 지름길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李美卿 委員

(교육인적자원부)

한총련 수배학생들에 대한 학습권, 인권 대책 마련 시급
－매년 되풀이 되는 악순환의 고리 이제는 끊어야

지난 3월 26일 노무현 대통령이 한총련 수배자들에 대해 “이들이 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포용해야 한다.”며 “사법적 처분의 존엄성도 중요하나 ‘사회적 통합’도 중요한 가치”임을 강조하면서 이 두가지를 적절히 조화시켜 한총련 수배자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의 통계에 따르면 한총련이 이적단체로 규정된 1997년 191명, 1998년 182명, 1999년에는 161명, 2000년 76명, 2001년 72명, 2002년 105명 등 지난 6년간 787명의 한총련 학생들이 구속되었으며 한총련 자료에 의하면 4월 4일 현재 전국적으로 176명의 한총련 관련 수배자가 있음.

한총련 관련 수배학생 연차별 인원수(한총련 자료)

수배연차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인원	87명	50명	16명	14명	3명	6명

대학의 단과대학 학생회장 이상이면 자동적으로 한총련 대의원이 되는 현실에서 매 해가 바뀔 때마다 수백명씩 생겨나는 한총련 수배자 문제는 사회적으로도 커다란 손실이 아닐 수 없으며 국제적으로도 우리나라의 부끄러운 인권 현실을 보여주는 것임.

얼마전 보건의료단체연합과 원직 녹색병원이 인도적 차원에서 한총련 수배학생 106명에 대한 공개건강검진을 실시한 바 있는데 총 176개의 질환이 발견되어 한 사람당 평균 1.7개의 질환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음. 오랜 수배생활로 인한 불규칙한 생활과 스트레스가 학생들에게 질병을 가져다 준 주요한 원인이었음.

특히 여학생의 경우 40.7%가 수배 이전에 비해 생리주기가 길어지거나 짧아지는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조사되었음. 일부 학생들은 심한 스트레스 누적에 따른 불안감과 우울증으로 인해 오랜기간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제출되기도 하였으며 부정맥(2건), 협심증 의증(1건), 고도근시(1건), 혈소판 저하증(1건)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있어 수배학생들의 건강이 심각한 지경에 까지 이른 것으로 파악됨.

한총련 수배 학생들은 길게는 7년에서부터 짧게는 2년째 수배생활을 하면서 감기나 식중독에 걸려도 병원 제대로 가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지난해에는 교생실습 중이던 여학생이 교생실습 도중 경찰에 연행되는 사건이 있었으며 형결혼식 참석 등 집안 대소사는 물론이고 심지어 부친의 장례에도 참석하지 못하는 등 매년 이런 비극이 되풀이 되고 있음.

97년 대법원이 5기 한총련은 이적단체로 규정한지 7년이 흘렀고 그동안 시대는 많이 변하였음. 그에 따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교육적 측면에서도 더 이상 이런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함.

어제 서울 경희대학교에서는 11기 한총련 대의원 대회가 대의원 830명 가운데 528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음. 이 가운데 실제 수배자의 수는 다를 수 있지만 법을 원칙적으로 해석하면 올해도 변함없이 830명의 수배자가 발생하는 것이고 적어도 참석한 528명은 수배자의 길을 걷게 됨. 단지 한총련 대의원이라는 이유로 수배자가 된다는 것이 21세기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것이 가슴 아프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법적인 논쟁을 하고 싶지는 않음. 단지 80년 군사정부시절 한 대학의 교수는 스크럼을 짜고 시위하러 교문 밖을 나서는 학생들에게 '차라리 나를 밟고 가라'고 했음. 그 교수가 학생들을 가로막고 나선 이유는 학생들의 주장이 옳지 않기 때문이 아니었음. 군·경과 충돌했을 경우 학생들이 다칠 것을 염려했기 때문임.

제가 이러한 일화를 든 이유는 수배를 당하는 이들이 바로 학생들이기 때문임. 이제는 한총련 수배자의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임. 학생들의 인권은 차치하고라도 최소한의 교육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임. 장관께 묻겠음. 장관이 아닌 학생들의 스승으로써 교육인적자원부가 먼저 나서 사정당국에 한총련 수배학생들의 문제 해결을 건의하거나 적어도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교원의 지방직화 교육의 질 저하 불러온다
—"법체계상 불합리" 지난해 법제처 의견 무색

지난 3월 19일 대통령 직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행정분과위원회를 열어 교원의 임용 관련 기능의 지방이양을 사실상 결정함.

※지방이양추진위원회 :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을 위해 1999년 8월 만들어진 기구로 국무총리가 공동위원장이며 본회의 산하에 실무위원회가 있음. 교원관련 실무위원회는 행정분과 위원회임.

지금까지 교원의 임용관련 사무는 교감, 교사, 장학사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초·중등교장의 경우 대통령이, 교육전문직원외의 교육감 소속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임용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각각 관장해왔으나 위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시·도 교육감에 넘김으로써 교원을 지방직화하자는 것임.

교원의 지방직화는 91년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법이 마련될 때 처음 거론되기 시작했고 가장 최근에는 지난해 4월 지방이양추진위에서 시·도 교육감들의 건의를 바탕으로 지방직화를 결정했으나 전교조,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들의 반발과 재정자립도의 시·도별 편차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점점 유보됐다가 이번에 다시 불

거짐.

찬성론자(시·도 교육감)들의 주장은 “진정한 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교장, 장학사, 교사 등 교원의 임면권을 시·도 교육감들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반대론자(교육관련 단체 및 일선교사)들은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태에서 교원이 지방직화될 경우 지역 간, 계층 간 교육격차가 심화될 것이며 학력과 학벌 경쟁이 강화될 것이고 교원의 신분이 불안정해질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음.

지난해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공무원법 제29조 1항, 3항, 제29조 2의 7항, 30조 등 교원의 임명과 관련된 각종 조항을 들고 교육공무원의 예우 차원에서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 교원의 지방직화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했고 법제처도 법 체계상 불합리 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음. 이번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교원의 지방직화를 결정하면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의견을 구했는지 아니면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일방적인 결정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아울러 이번 결정이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하락시키고 사기를 저하시켜 교직안정과 교육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함.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지요?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의 경우 전국 평균 54.6%를 기록한 가운데, 서울이 94.6%로 가장 높은 반면 전남의 경우 20.4%에 불과했음. 지방교육재정자립도의 경우도 2002년을 기준으로 26.3%에 불과한 실정임. 따라서 저는 현 단계에서의 교원의 지방직화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교육환경의 저하는 물론 교사의 임금 편차 확대, 교원의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기간제 또는 계약제 임용확대 등 교육의 불평등 구조가 심각한 수준으로 심화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음. 이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견해는 무엇인지요?

지난해 5월 전교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88.2%의 교원들이 지방직화에 반대했으며 역시 한국교총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교원의 98%가 반대했고 98년 3월 국정과제로 선정된 직후 정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교원의 77.2%가 반대했던 사업임. 결국 교원의 지방직화가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결정대로 실시된다면 교육계는 걷잡을 수 없는 갈등을 빚을 것임. 따라서 저는 부총리께서 이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해야 한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지요?

교과서 편수제도 개선 시급
－편수인력 확충, 편수직렬 신설 등이 대안

19세기 초 프로이센 시대의 개혁가이자 독일 베를린 대학을 설립한 훔볼트는 언어를 한 인간의 정신적 거울이자 민족의 성격이라고 규정했음. 즉 그는 언어가 단순히 사물을 명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사상을 체계화하고 대대로 내려오는 다양한 민족적 특성을 민족문화로 종합하여 다음 세대에 계승하기 위한 도구라고 말했음.

교과서는 바로 우리 언어 사용의 모범적인 용례, 국민 모두가 기준으로 삼아 따라야 할 규칙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고 생각하고 지난해 국정감사 시 우리 말을 가장 정확히 담고 있어야 할 국어 교과서에 대한 오류 실태를 분석한 바 있음. 분석에 따르면 오류 실태가 너무나 심각했고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된 데에는 편수인력과 제도가 너무나 졸속적으로 조정되어 왔기 때문이라는 판단을 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 대책을 촉구한 바 있음.

당시 저는 대안으로 교과서 편찬 예산 확충, 전문 편찬인력 확충, 편수관련 직제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이에 관한 연구조사를 요청한 바 있음.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편수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고 그 결과물이 나왔음.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 편수제도는 국가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 정책은 거시적 관점에서 정책이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함에도 편수조직의 잦은 개편, 축소지향적 개편으로 정책의 일관성, 지속성, 안정성이 저하된다고 밝히고 있고 편수인원 대비 담당업무 과중, 담당기구의 규모축소(96년 52명에서 현재 22명), 정책결정(교육인적자원부)과 집행(평가원)이 분리된 이원 체계 등이 오늘의 문제를 불러왔다고 지적하고 있음.

이 연구서는 이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편수기구 및 편수정책의 안정성 및 일관성 확보, 편수행정의 효율적 운영 및 책무성 제고를 위한 역할 분담 체계 재정립, 국가수준 편수관련 조직의 위상 제고 및 인력규모의 현실화, 인력의 일관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편수직렬의 신설 등

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음.

교과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오류가 없어야 함. 올바른 우리말을 담는 그릇이자 미래 우리 사회를 이끌 아이들이 공부하는 책이기 때문임.

지난해 지적했듯이 교과서 내 오류를 없애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장관은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아울러 위 연구서를 어떻게 활용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거듭 강조하지만 '검토하겠다', '연구하겠다', '노력하겠다'는 정도의 대답으로는 곤란하며 구체적으로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인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람.

급하다고 우물에서 숭늉을 찾아서야 －특수교육 보조원제도 졸속도입 보다는 체계적인 대책 마련해야

2001년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실시한 '특수교육요구아동 출현율 조사연구'에 의하면 6~11세 초등학교 학령인구 중 장애학생은 24만 6061명으로 추정되며 이들 가운데 61.25%인 15만 712명은 일반학급에서 교육이 가능하고 나머지 28.75%인 9만 5249명은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교육대상자로 추정됨.

또한 지난해 교육인적자원부가 실시한 특수교육실태조사에 의하면 2002년 4월 현재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특수교육기관에 배치된 장애학생은 136개 특수학교에 2만 4276명,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학생은 2만 6925명으로 모두 5만 1201명이며 이는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서 배치된 장애학생은 3269명으로 일반학급에서 교육이 가능한 장애학생의 2.17%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수교육 대상자 중 특수학교 재학생은 대부분 다양한 장애 특성과 개인차가 심한 중도·중복 장애학생들로 교사 1인이 학급의 모든 학생에 대한 교육과 관리를 모두 감당하기란 쉽지 않음. 중도·중복 장애학생의 경우 지적 능력은 물론 여러 가지 신체적 기능의 장애가 있기 때문임.

현재 특수학급의 학습당 학생 수는 평균 7~8명이며 최대 12명까지 배치된 상황임. 그러나 장애학생의 요구에 적합한 개별화 교육을 위해서는 학생당 학생 수가 3~4명 수준이 적당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임.

특히 중도·중복 장애학생의 경우 용변 등의 신변처리 능력이 부족하고 과잉행동이나 충동행동 등의 문제 행동을 많이 나타내어 보조원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교육인적자원부가 저에게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2002년 8월 현재 전국 136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및 2만 119개 통합학급에서 2647명의 특수교육 보조원을 활용하고 있으나 인천시 교육청에서 활용하고 있는 53명의 유급 고용원 외에는 모두가 자원봉사자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인력 확보 및 활용에 어려움이 많다고 함.

다행히 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1250명을 우선 선발해 시범적용한 후 2007년까지 1만 250명을 일선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등에 배치하여 특수 교육대상학생의 과잉행동과 충동행동 등의 문제행동 관리, 용변처리와 학습활동을 지원하는 인력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이 점은 긍정적이라 평가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확대돼야 하고 그 시기를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함.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가 저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분은 일용직이며 60시간의 특수교육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하면 보조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되어 있음.

교육인적자원부장관께 묻겠음. 먼저 현재 영양사 조리사 등 교육관련 일용직의 1일 급여 평균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영양사가 3만원, 조리사가 2만 8000원임. 따라서 이들은 한달 80여만 원의 급여만을 받고 있음. 중중의 장애인을 보호하고 학습활동을 지원하는 인력이라면 상당한 전문성을 요하는 일일 것임. 결국 월 80만원에 방학 중 월급도 받지 못하는 일용직으로서는 실효성있는 사업을 기대하기란 어렵다는 것임.

보조원 자격을 보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교사 자격증을 가진 자로 특수교육 및 사회복지 관련학과 출신자,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 되어 있음. 이러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과연 월 80만 원을 받고 보조원으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장관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람.

또한 60시간의 교육연수를 실시한 후 학교 현장에 투입하겠다는 것이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임. 60시간이면 하루 6시간 교육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10일에 불과한 시간임. 그러나 장애학생들은 장애 정도부터 장애 종류에 이르기까지 다종 다양함. 따라서 모든 학생들의 개인차와 특별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교육내용 또한 심층적이어야 할 것임.

먼저 60시간의 교육프로그램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 장관께서는 60시간의 교육으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2001년 학부모와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조원의 자격 요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전문대 이상 졸업자의 보조원의 보조원 양성과정 이수자를 응답자의 46%가 대학의 교육학 관련학과 졸업자의 활용을 34%, 자원봉사자가 12.5%였음. 결국 학부모들은 국민공통보통교육이상의 교육과정을 필하고 일정한 양성과정을 통해 필요한 자질을 가진 자들을 보조원으로 배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임. 따라서 저는 당장은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장기적으로는 보조원 양성과정 등에 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崔榮熙 委員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설립준칙주의의 문제점에 대하여

다음은 대학정원의 과다와 이에 따른 교육의 질적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대학설립준칙주의'의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대학설립준칙주의는 그동안 대학의 설립을 엄격하게 제한해 온 대학설립준칙주의를 대신해서 1995년 5월 「5. 13 교육개혁방안」의 일환으로 제시되었고 이듬해인 1996년 7월부터 「대학설립·운영규정」을 통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대학설립준칙주의를 시행하면서 내세운 목적은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였지만 이면에는 학생들이 보다 쉽게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취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대학설립준칙주의라는 것은 대학설립을 전보다 쉽게 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학설립의 규모 측면에서 보면 인가주의가 적용될 때는 5000명의 총정원에 25개 이상의 학과를 설치해야 했던 것이 준칙주의가 적용되면서 정원과 설치학과의 하한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외에도 학교부지·교사·교원·수익용 기본재산·도서·기숙사·실험실습설비 및 교재교구 확보기준과 같은 설립요건도 가급적 최소기준만 갖추도록 해 대학설립이 아주 용이해진 것이지요.

제도시행 8년차에 접어든 지금 결과적으로 대학은 급증하였고 2003년 대학의 입학정원이 67만 436명인데 반해 고교 졸업자나 졸업예정자는 59만 3643명으로 입학정원보다 응시자가 7만 6793명이나 부족한 상황이 초래되고 말았습니다.

대학입학준칙주의가 적용된 이후 지금까지 36개의 4년제 대학과 26개의 대학원 대학이 설립되었고 전문대학제도가 도입된 1979년 이후 전문대학의 입학정원은 21만 명이 그리고 4년제 대학의 입학정원은 22만 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오는 2009년까지의 추정치를 보면 앞으로 이 상태에서 더 이상 대학이 설립되지 않고 기존의 대학들이 정원을 동결한다고 전제하더라도 대학입학정원이 고교졸업자를 초과하는 수급 불균형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교육인적자원부도 대학설립준칙주의로 인한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같은 대학설립인가주의로 돌아가자니 규제개혁위원회가 반대하는 진퇴양난의 기로에 있는 줄 압니다.

부총리에게 묻겠습니다.

1인당 합계 출산률 1.3이하로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는 출산률을 감안하면 멀지 않은 장래에 대학입학 자원이 급감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결국 대학정원의 감축이나 학교 통·폐합 같은 수단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만 부총리께서는 경쟁력 없는 대학은 자연히 폐교되도록 하고 경쟁력 있는 대학만 살아남도록 시장논리에 맡기실 것인지 아니면 자진 통·폐합 또는 폐교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 정원감축을 유도할 것인지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입학정원대비 고교졸업자 현황>

2003년 4월 1일 현재

구 분	'03	'04	'05	'06	'07	'08	'09
대학정원(명)	665,673	665,673	665,673	665,673	665,673	665,673	665,673

구 분	'03	'04	'05	'06	'07	'08	'09
입학정원(명)	693,743 (고3)	602,908 (고2)	698,958 (고1)	602,816 (중3)	610,239 (중2)	627,975 (중1)	623,843 (초등6)
부족인원	-72,030	-62,765	-66,715	-62,857	-55,434	-37,698	-41,830
입학정원충원율	89.2%	90.6%	90.0%	90.6%	91.7%	94.3%	93.7%

2005년 사회탐구영역 수능안에 대하여

다음은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첫 번째 대학입학전형이 이뤄질 2005년 대입수능시험안 가운데 사회탐구영역의 과목별 선택군 중 윤리군 편성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2004년도의 경우 사회탐구영역은 국사와 일반사회, 한국지리, 윤리 등 4개 과목을 필수교과목으로 하고 세계사와 경제, 정치, 사회문화 중 한 과목을 택일하도록 되어 있어서 역사와 일반사회, 지리, 윤리 등 사회과목 전반을 비교적 골고루 공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7차 교육과정에서 의한 2005년도 사회탐구영역 수능안을 보면 역사과목을 한 군으로 묶어 국사·한국근현대사·세계사로 세분하고 있고 일반사회군도 법과 사회·정치 등 4개 과목으로 지리군도 한국지리·세계지리·경제지리 등으로 세분한 반면에 윤리군만 윤리와 사상 플러스 전통윤리 단 한 과목으로 편성하고 이들 11개 과목 중에서 4개 과목을 택일하도록 했습니다.

<2004년 및 2005년도 수능안 비교>

2004년 사회탐구영역 수능안	2005년 사회탐구영역 수능안
국사, 일반사회, 한국지리, 윤리과목 필수	*역사군 : 국사, 한국근현대사, 세계사 *일반사회군 : 법과 사회, 정치, 경제, 사회문화 *지리군 : 한국지리, 세계지리, 경제지리 *윤리군 : 윤리와 사상+전통윤리
세계사, 경제, 정치, 사회문화 중 택일	위 11개 과목 중 4개 선택
전 교과목을 비교적 골고루 공부할 수 있음	과목편중은 물론 특히 윤리과목 기피예상

이러한 분류가 이루어진 배경에는 윤리와 사상을 가르친다면 전통윤리도 함께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이 작용한 걸로 보이는데 취지야 그럴듯 하지만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점수 따기 쉬운 과목을 선택하게 마련이고 이런 현상은 이미 교육현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서울시내 한 입시전문학원이 겨울방학 7차 교육과정을 선택한 200여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인문계 학생의 경우 국사선택이 96%, 한국근현대사 역시 96%, 한국지리가 94%로 특정과목 편중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경제가 63%, 정치 40%, 법과 사회가 34% 등으로 나타난 반면 윤리군을 선택한 학생이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차원에서 재학생을 대상으로 사회탐구 영역별 선택 실태를 조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다면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본 위원의 견해로는 현재의 사회탐구영역 편성을 그대로 끌고갈 경우 이러한 과목편중 현상과 윤리과목 기피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따지고 보면 전통윤리와 관련되는 내용은 윤리와 사상은 물론 국사나 사회문화 등 다른 과목과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를 따로 구분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과목군들은 서너 개 교과목으로 구분하면서 유독 윤리군만을 윤리와 사상 플러스 전통윤리도 표시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무언가 공부할 양이 많고 점수 얻기가 힘들 것 같다는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선택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부총리에게 묻겠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로는 2005년 사회탐구영역 과목군 중 윤리군을 지금처럼 윤리와 사상 플러스 전통윤리로 표기해서 선입견으로 인한 부담감을 줄 것이 아니라 '윤리와 사상'으로만 표기하고 교과과정에 전통윤리를 적절히 안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윤리교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일선교사들은 윤리군에 단 한과목만 포함시키지 말고 내용을 적절히 나누어서 최소한 두개 이상의 과목군으로 세분해 달라는 건의를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답변바랍니다.

(답변서)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구두질의에 대한 답변부분>

(尹景湜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이번 보성초등학교 사건을 바라보는 부총리의 시각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충격과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으며 다시 한번 고(故) 서승목 교장선생님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교육현장이 극한적인 갈등현상과 투쟁일변도로 변해가고 있는 것은 우리 교육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는 이러한 갈등현상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교직단체, 학부모, 현장교원, 교장단, 시민단체, 교육전문가, 노동전문가 등 각계 전문가가 모두 참여하는 「교육현장안정화대책기획단」을 설치·운영 중에 있으므로 학교현장을 갈등과 대립에서 신뢰와 협조의 장으로 바꿀 수 있는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직단체 상호간에도 비타협적인 투쟁보다는 양보와 협조 속에 우리 교육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는 관계가 유지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李在禎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학술원에서 우수학술도서 선정·지원사업을 하면서 매년 50억 원이나 되는 예산을 들여 도서를 구입하여 대학에 지원할 필요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수학술도서선정·지원사업은 기초학문분야의 연구와 저술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2002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서 사업이 지향하는 목표가 대학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인문학을 비롯한 기초과학분야의 학자들과 출판사를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예산 50억 원으로 우수도서 약 400종을 선정·구입하여 대학과 공공도서관에 보급하고 있는데 각 대학에 보급되는 도서는 대학당 약 920권 정도로 규모가 큰 대학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으나 소규모 대학이나 공공도서관에는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선정된 도서 1종당 구입총액이 약 1200만 원에 불과하여 기초학문분야의 학자들의 연구와 저술활동을 지원하는 효과가 다소 미흡한 실정으로 앞으로 본 사업의 취지를 살린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도서 1종당 2000만 원 정도를 구입하여 지원되도록 사업비 예산을 대폭 증액할 필요가 있으므로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학술원은 대학의 팽창과 학문발전 상황에 부응하여 학술원 회원의 정원을 대폭 증원할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대한민국학술원의 회원정원은 1988년 100명에서 150명으로 증원된 이래 변화가 없어 학문의 세분화와 대학교수의 증원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나 향후 학술원 회원의 정원을 늘리는 문제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2003년 중으로 학술원 회원 정원에 대한 기초연구를 실시하고 학술원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이를 바탕으로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하여 증원계획을 확정하여 대한민국학술원법 개정을 통해 정원을 증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학술원 회원의 연구비 지원액이 1건당 700만 원에 불과한데 이를 대폭 증액할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학술원에서는 매년 11개 과제의 연구자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그 연구결과를 연구논문집으로 발간하여 대학과 학술단체 등에 제공하고 있으며 회원에 대한 연구비는 2002년까지는 1과제당 500만 원이던 것을 2003년부터는 700만 원으로 증액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회원들이 심도있는 연구를 수행하기에는 매

우 미흡한 수준입니다.

회원들이 마음놓고 심도있는 연구를 할 수 있으려면 과제당 최소한 1200만 원은 지원되야 한다고 보는 바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하여 2004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간 대학평가인증기관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과 구성원칙 앞으로의 프로그램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崔榮熙 위원님께서도 자료 요청하신 사항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민간평가전문기관 인증제 관련자료

【붙 임】

민간 평가전문기관 인증제 관련

□주요 내용

○급격한 학문발달, 평가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평가는 해당 학문분야만 담당하는 민간 평가기구에서 담당하도록 지원

－공학교육, 의학·약학, 건축학 등의 분야는 급격한 학문발달로 인해 평가주기가 짧아야 하고 해당 분야 평가 know-how가 축적되어 있는 전문가들이 일관성 있는 평가를 담당해야 신뢰성·타당성 담보 가능

○각 학문분야별 민간평가기구에 대한 인정은 향후 설립예정인 전문 평가기구에서 담당

○민간 평가기구의 학문분야 평가를 교육부 평가결과로 인정하여 대학에 대한 각종 행·재정 지원시 근거자료로 활용

□도입 배경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일부 학문분야의 경우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시행하는 평가로는 적시에 적합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곤란

－대교협에서는 평가의 대상이 되는 학문분야 분류를 총 44개 분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대교협이 매년 2~3개 분야의 평가를 시행하는 것을 고려시 학문분야별 평가 인정주기가 평균 14년~22년이 되는 불합리 발생

☞해당 학문분야에 대한 정보제공 의미 축소, 이전 평가결과와의 연계성 부족으로 인해 학문발전 기초자료로의 활용도 미흡

○대학의 특성화·다양화, 대학학사 운영의 자율성 등으로 인해 복잡하고 다양한 각 대학의 학문분야 평가를 위해서는 정량적 평가보다 정성적 평가가 중요시되어지나

－매년 필요시 일회성으로 해당 학문분야 교수들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하는 현행 대교협평가 체제하에서는 정량적 평가에 많이 의존하게 되며 정성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이 불인정하는 사례 발생

○대교협 학문분야 평가의 평가결과 활용도 미흡

－대교협이 모든 학문분야에 대한 평가를 담당하므로써 전문가·행정력 부족 등으로 평가결과를 책으로 발간할 뿐 평가결과에 대한 전문적 관점에서의 자료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평가결과가 향후 대학의 학문분야 발전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바 평가에 투입된 행·재정력 및 시간 대비 활용도가 낮음

○대교협의 기관성격(대학을 회원교로 둔 협의체)에 따른 평가의 한계

－대교협은 대학의 권익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된 협의체로서 회원대학에 대한 불리한 평가결과의 객관적 공개가 사실상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평가결과가 대학별 최우수·우수·보통·미흡·개선요망으로 구분되어 발표되어질 뿐 개개 학교에 대한 세세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기대효과

○평가결과 활용도 대폭 제고

－자료에 대한 전문적 분석 및 시계분석 등을 통해 대학의 동 학문분야 발전을 위한 전략조언 및 지침제고 가능

－상세한 분석자료를 통해 교육수요자에게 학교별 정보제공 가능

○평가의 신뢰성·타당도 제고

－학문발달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분야에 대해 적시성 있는 평가가 이루어져 평가의 신뢰성·타당도가 증가

－일정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평가의 전문화가 가능

○국제사회에서의 평가결과 동시 인정에 따른 장점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이 향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학교육인증협약“에 가입할 경우

(05년 가입 추진), 동 기관의 인증을 받은 국내대학은 협약국내에서 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됨

※협약국내 기사자격 시험 응시 가능, 일부 과목 면제 등 혜택이 주어짐.

【별 첨】

외국의 주요 평가기구 개관

국가명	평가 기관	성격	구 성
미국	고등교육평가인정위원회 (CHEA)	비영리, 비정부조직	• 미국내의 대학평가 인정활동을 조정하는 전국단위의 조직체 • 대학평가인정기구를 인정하는 역할 수행 －지역평가인정기구(8개 지역) －전문분야별 평가인정기구(44개) －전국단위평가 인정기구(6개)
영국	고등교육질보장기구 (QAA)	독립적인 민간기구	• 14명의 이사로 구성 : 독립적 위원임 • 대학과 학문분야별 평가 수행 • 학생, 일반인에게 고등교육의 질에 관한 명확한 자료 제공 • 학위 수여권 및 명칭에 관한 조언 등 →평가 결과는 고등교육지원협의회(HEFC, 대학보조금 배정 역할 수행)의 재정지원 자료로 사용
일본	대학평가 학위수여원	국가기관	• 대학평가 실시(영역별 평가 : 매년, 학과별평가:5년, 연구소 연구활동 평가 : 5년) • 대학평가 관련 연구 수행 • 정보 서비스 제공
일본	일본대학 평가인정협회	재단법인	• 38% 대학이 회원, 42% 대학이 찬조회원임 • 신규회원이 되고자 하는 회원대학에 대한 신규 평가인정과 기존 회원대학에 대하여 매10년마다 실시하는 재평가인정 두가지가 있음
프랑스	국립평가위원회 (CNE)	대통령 직속기관	• 대통령이 임명하는17명의 위원으로 구성 • 고등교육성 소속 대학, 전문학교, 고등전문학교 평가(재정지원이 아닌 경영진단의 성격) • 기관평가와 학문/학과평가 동시 실시 →고등교육부가 주관하여 평가인정제 시행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부분>

(李揆澤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으로 전환, 식중독 발생 위탁급식업체에 대한 계약해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 철저한 위생관리와 사고업체에 대한 가차없는 퇴출만이 식중독사고 예방의 지름길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학교급식 운영형태는 학교급식법에서 학부모의 의견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시 교육청은 위탁급식 원칙을 학교에 시달하여 학부모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결과에 원인이 있으며 금년 3월 집단식중독 사고를 계기로 학교가 원하는 경우는 계약기간 만료 시에 직영급식 전환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수정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위생사고 발생업체는 계약을 해지토록 하는 등 다시는 학교급식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교육청 홈페이지에 급식업체와 대표자 명단을 공개하는 등 제재조치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이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교원의 지방직화에 대하여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 강력하게 철회의사를 전달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교원의 지방직화에 대해서 이해 당사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의 개선 등 관련 제도의 정비가 선행된 후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내용을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히 밝혔으며 향후 교원의 지방직화와 관련한 논의가 있을 때에도 이와 같은 입장을 견지할 것입니다.

(李美卿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학생들의 스승으로써 교육부가 먼저 나서 사정당국에 한총련 수배학생들의 문제 해결을 건의하거나 적어도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한총련 활동으로 매년 다수의 학생이 학업 중단, 사생활을 제약받고 있는데 대하여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에서 한총련을 이적단체 판결(98. 7) 등 사법 판단에 대하여 우리 부가 먼저 건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나 대통령의 한총련 관련 말씀 후 관계기관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학생들의 사법처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의견을 개진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총련에서도 이념적 노선을 탈피하고 학생들의 자율단체로 탈바꿈하여 학생회 활동으로 인한 사법적 심판을 받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철저한 위생관리와 식중독 사고 업체에 대한 가차없는 퇴출만이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는 지름길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방안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앞으로 위생사고 발생업체는 계약을 해지토록 하는 등 다시는 학교급식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교육청 홈페이지에 급식업체와 대표자 명단을 공개하는 등 제재조치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이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교원의 지방직화에 대하여
(1)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 강력하게 철회의사를 전달할 용의가 있는지?
(2)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교원의 지방직화를 결정하면서 교육부에 의견을 구했는지 일방적인 결정이었는지?
(3)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하락시키고 사기를 저하시켜 교직안정과 교육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
(4)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교육환경의 저하, 교사의 임금 편차 확대, 교원의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기간제 또는 계약제 임용확대 등 교육의 불평등 구조가 심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
(5) 교원의 지방직화가 실시되면 교육계는 갈등을 빚을 것임. 이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교원의 임용권 이양(교원의 지방직화)에 대하여 우리 부에 의견을 물어왔으며 반대 의견을 서면 및 회의 참석을 통해 밝혔습니다.

교원 및 각 교직단체에서는 이를 교원 예우에 대한 훼손으로 간주하여 반대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에 따라 교원정원 확보 및 보수 등에 있어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임용권의 이양(교원의 지방직화)은 이해 당사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의 개선 등 관련 제도의 정비가 선행된 후 검토되어야 하며 또한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관계 재정립이 필요한 사항으로 향후 전반적인 정부혁신의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교원의 지방직화와 관련한 논의가 있을 때에도 이와 같은 입장을 견지할 것입니다.

교과서내 오류를 없애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교과서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정도서는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에 근거하여 매년 직권으로 오류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국가·사회의 변화에 따라 통계자료나 법률 등 최신자료로 대체하는 등 수정·보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검정도서는 규정에 따라 개발기관에서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고 사안에 따라 전문가와 협의를 거치는 등 교과서 수정·보완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편수행정 전반의 개선을 통하여 편찬단계부터 오류방지체제를 구축하고 교과서 보급 후에는 현장모니터링제 도입, 교과연구회 활용 등 교과서의 질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편수제도 개선방안 연구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와 어떤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인지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부에서는 편수인력 부족 문제를 비롯한 편수제도 및 업무 전반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정책연구를 추진하였습니다. 2001. 편수인력의 자질 및 전문성 신장 방안 연구, 2002. 편수제도 개선 연구, 2003. 주요국가의 편수기구 및 편수제도 연구(추진 중), 일본의 교과서 검정제도 연구(추진 중)

정책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조직개편 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기구 및 인력이 확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정책실 아래 국(局) 수준의 교육과정정책심의관을 신설하여 교육과정 및 편수정책을 담당, 현재 22명인 편수담당인원을 증원, 편수기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유능한 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입니다.

현재 영양사, 조리사 등 교육관련 일용직의 일일 급여 평균이 얼마인지와, 월 80만 원을 받고 보조원으로 일을 할 수 있다고 보는지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전체 9989개교 급식을 위하여 급식전담직원인 영양사가 7196명 배치되어 있으며 신분별로는 정규직 72.4%(5207명), 비정규직 27.6% (1989명)입니다.

이들 비정규직의 임금은 기획예산처의 '세출예산집행지침'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며 2003년도 일급은 영양사 3만 2930원, 조리사 3만 950원, 조리보조원 2만 7710원입니다.

비정규직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학교장과 당해 근로자간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에 의하여 주차·월차수당을 지급받고 건강·산재보험 등을 적용받으며 일용직 영양사의 경우 월평균 20일 근무에 25일분의 임금 82만 원 정도를 지급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보수로는 업무량과 책임성·중요도에 비추어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시·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총 정원제와 정원증원 동결로 정규직 전환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교육보조원에 대한 일용직 대우와 60시간 연수의 적합성 및 향후 양성과정 등에 대한 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특수교육보조원은 중도·중복 장애학생의 신변처리 및 안전 생활지도 등의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특수학교,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에 배치하고 있는 특수교사를 보조하는 준전문가로서 전산 보조원, 과학실 보조원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용직으로 대우하고 있으며 사전연수(60시간) 외에 특수교사의 지도를 통해 장애아동의 지도에 관한 전문성을 확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유급 특수교육보조원 배치현황 ('03. 3 현재)

- 7개 교육청(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강원, 전북)에서 283명 유급보조원 배치

2003년부터 2004년까지 특수교육보조원제 시범적용 이후 특수교육 보조원의 자격기준 및 교육프로그램 등의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새로운 운영방안을 마련한 후 2005년부터 연차적으로 특수교육보조원의 배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수교육보조원 교육프로그램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자료 수합 중)

(李在禎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교육부총리가 생각하는 교단갈등의 원인과 근본적인 치유의 방법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교육현장의 갈등현상은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주요원인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선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거 일부 교장들의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학교운영 시스템에서 비롯될 수도 있고 교육정책에 대한 교육당국과 교직단체간의 인식차이로 인한 갈등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교원노조법상 단체교섭 의제선정, 이행책임소재 등이 불명확하여 단체교섭 과정과 이행 추진과정에서 노사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위학교 수준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중재조

정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한 것도 갈등이 확대 재생산되는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부에서는 교육현장의 갈등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하여 「교육현장안정화대책기획단」을 통해 장·단기 종합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교육현장안정화대책기획단」에서 검토할 과제 (예시)>

(1) 정책입안 단계부터 교육공동체 구성원 참여 활성화
- －시·도 교육청, 교직단체, 학부모, 교장단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교육공동체 정책협의체」 구성·운영

(2)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도모하는 민주적인 학교운영 방안 마련
- －민주적 리더십과 의사결정을 통한 교육의 공공성 책무 수행방안
- －효율적인 교원복무 감독을 위해 합리적인 교장권한 기준마련 등

(3) 단위학교별, 지역교육청별로 「학교분쟁조정기구」 설치 방안
- －기존의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확대 개편 운용

(4) 교원노사관계를 발전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 －노사협의를 통해 학생의 학습권이 보호되고 교원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교원노조 활동의 틀 재정립
- －교원노조법, 국가공무원법 등의 상충 및 미비사항 재정비
- －단체교섭, 노조업무 진행 등을 담당하는 전문가 양성

보성초등학교 학생들이 수업을 받지 못하는 등 1차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에 대해 조속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교장선생님의 자살 사건 이후 사건과 관련된 교사들에게 자녀교육을 맡길 수 없다는 이유로 4월 7일부터 학부모들이 자녀의 등교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청 및 학교에서는 가정통신문 발송, 가정방문, 학부모대표와의 협의 등을 통해 등교를 독려하여 왔습니다.

등교 거부로 인하여 발생된 수업결손을 막기 위해 4월 9일에는 마을 공부방 운영, 4월 11일과 4월 12일에는 자율학습용 가정학습자료를 제작·배포하였으며 4월 14일부터 4월 17일까지는 학부모와 합의 하에 교회 및 마을회관에서 인근학교 기간제 교사 3명의 지원을 받아 임시 수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사건 관련 교감선생님 및 전교조 소속 교사 2명을 인사발령함으로써 4월 18일부터는 정상 등교하여 수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결손이 생긴 수업일수(4일)는 방학기간 등 학사 일정 조정을 통해 보충할 예정이며 학생들이 입었을 정서적 치유를 위해 관련 지원단체의 협조를 통한 심성프로그램 운영(2회),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와 함께 하는 체육활동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교원의 처우개선과 더불어 현재 항시적 부족사태를 겪고 있는 농어촌 지역 초등교원 수급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이 강구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기간제 교원의 처우를 각 시·도 교육청에 실질적으로 정규교사와 같은 수준으로 대우하도록 지도·감독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농어촌 지역의 초등교사 확보를 위하여 "교육감 추천 교대 신·편입학제"를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감 추천 교대 신·편입학제 : 교육감추천으로 교대에 입학한 학생은 졸업 후 해당 지역의 임용고사에 응시하여 일정기간 의무 복무토록 하는 제도 03년 강원, 전남, 충남 3개도→04년 이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8개도

농어촌 교직원 사택지원(02~04년까지 4812호, 1221억 원), 도서벽지 근무자 가산점 부여, 인사관리 기준상 우대 및 도서벽지 수당(월 2~5만원)지급 등과 함께 향후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를 통해 농어촌 지역 근무자의 병역특례제도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단체교섭의 결과가 각 단체 회원에게만 구속력이 있는지 혹은 비회원인 모든 교원에게 적용되는지 물으셨습니다.

단체협약의 효력은 협약당사자의 구성원들에게만 미치는 것이 원칙이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서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경우에 해당사업장의 다른 동종의 근로자들에게까지 당해 단체협약의 규범

적 부분이 확장되도록 하는 일반적 구속력 규정을 두어 예외적으로 비조합원인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이 확장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국·공립학교를 적용범위로 하여 교육감과 교원노조(지부)간에 체결된 시·도 단위 단체협약이 일반적 구속력 규정에 의해 사립학교에까지 확대 적용될 수는 없을 것이며 국·공립학교에서도 교원노조 조합원이 없거나 조합원이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교육정책적 차원에서 국·공립학교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상 내용을 준거로 하여 사립학교를 포함한 여타 교육기관에 대해 학교운영 지침이나 권고안을 시달하고 이러한 지침이나 권고안을 개별 교육기관이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굳이 각각의 단체와 개별적인 단체교섭을 하는 이유와 교원단체 간의 안정과 화합을 위해 단체교섭 창구의 통합을 주도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교원단체의 안정과 화합을 위해 교총과 교원노조로 이원화되어 있는 단체교섭 창구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님의 견해는 매우 의미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교육부, 시·도 교육청 등 교육당국과 교총, 교원노조의 교섭구조는 법령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이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교총과의 교섭을 규정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원노조와의 교섭을 규정한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을 통합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우리 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교육현장안정화추진기획단」에서 법과 제도 개선 측면에서 심도 있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교육현장안정화추진기획단'의 구체적 역할과 위상은 어떻게 상정하고 있는지? 갈등과 대립에서 신뢰와 협조의 장으로 방향전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교육현장안정화추진기획단'은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여 교직단체, 시민단체, 현장교원, 학부모, 교육전문가, 노동전문가 등과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 관계자 20여 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원로인사들의 자문활동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기획단에서는 교육현장 갈등의 실태와 원인을 분석하고 교직단체와 일선교육기관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현장 갈등에 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입니다.

또한 정책입안 단계부터 시·도 교육청, 교직단체, 학부모, 교장단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교육공동체 정책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계획인 바 이는 교육정책에 대한 불만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이를 통해 교육현장이 갈등과 대립에서 벗어나 상호신뢰와 협조의 장으로 변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현장안정화대책기획단」에서 검토할 과제 (예시)>

(1) 정책입안 단계부터 교육공동체 구성원 참여 활성화
- 시·도 교육청, 교직단체, 학부모, 교장단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교육공동체 정책협의체」 구성·운영

(2)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도모하는 민주적인 학교운영 방안 마련
- 민주적 리더십과 의사결정을 통한 교육의 공공성 책무 수행방안
- 효율적인 교원복무 감독을 위해 합리적인 교장권한 기준 마련 등

(3) 단위학교별, 지역교육청별로 「학교분쟁조정기구」 설치 방안
- 기존의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확대 개편 운용

(4) 교원노사관계를 발전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 노사협의를 통해 학생의 학습권이 보호되고 교원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교원노조 활동의 틀 재정립
- 교원노조법, 국가공무원법 등의 상충 및 미비사항 재정비
- 단체교섭, 노조업무 진행 등을 담당하는 전문가 양성

(1) 시간강사들에게 사회보장 혜택에 대한 제도화를 위한 검토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의견과 (2) 다양한 형태의 안정적 연구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용의

(3) 시간강사에 대한 급여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며 사립대의 경우 재정압박이 있을 시 국가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부에서는 시간강사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혜택 부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의 관련법령 개정과정에서 우리 부의 의견을 전달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관련부처와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시간강사의 안정적 연구활동 지원을 위하여 강의전담교수제, 연구교수제 등 다양한 형태의 제도를 신설 또는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학문후속세대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시간강사에 대한 연구비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시간강사의 급여 등 처우 개선 문제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시간강사료 단가를 인상하는 등 처우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방학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는 방안이나 사립대학 강의수당의 일부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사립대학 시간강사의 재정지원은 예산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탁급식에서 직영으로 순차적 전환 및 학교급식전담 관리기구의 구성, HACCP 적용현황과 확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위생사고가 발생한 학교부터 학교가 원하는 경우 직영전환을 추진하고 나머지는 계약기간 만료 시 순차적으로 전환토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1만여 학교에서 655만 명의 학생이 이용하는 학교급식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체계적인 위생관리 지도 및 급식종사자 교육·훈련 등 기술지원을 전담할 급식관리기구의 설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학교 내 급식시설을 갖춘 학교는 7655교이며 이 중 88%인 6760교에서 HACCP을 적용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모든 학교가 적용토록 시·도 교육청을 통해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학교급식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최적입찰제 또는 지역특성에 따른 “표준가격”제시 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추가비용 및 그 조달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식재료는 공산품과는 다른 특성이 있으므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식재료 납품 희망업체의 운영관리 능력과 위생관리능력, 식재료 납품가격, 질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납품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표준가격’ 제시는 물가의 수시 변동과 계절적·지역적으로 수요공급의 차이가 있어 일률적으로 도입하기는 어려우나 위원님 말씀대로 양질의 우수한 식재료가 학교급식에 사용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지방대학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과 소요예산 확보의 구체적 방안에 대한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지방대학의 집중육성 업무를 전담할 부서로 「지방대학발전기획팀」을 대학지원국 내에 설치하고 ’03. 4. 21부터 가동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담팀에서는 금년 중에 입법완료할 예정으로 「지방대학육성에관한특별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는 지역 인재채용목표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대학 육성의무, 지방대학육성을 위한 특별회계의 설치 등을 포함하여 지방대학을 법적·제도적으로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의 확보는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함께 곧 연차별 재정투자계획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와 협의, ’04회계년도부터는 집중적인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대학의 위기에 대해서 지방대학이 자구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부는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참여정부에서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정책의 기본방향은 대학 자율성을 확대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지방대학의 위기는 지방 산업·경제의 침체로 취업기회가 수도권에 편중되고 대학의 무분별한 양적 팽창에 기인하므로 지방대학을 육성하는 방안도 지역 산업·경제 발전 등 교육외적인 요인과, 대학 서열화 완화 및 대학 특성화를 통한 대학 자체 경쟁력의 강화 두 측면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각 대학이 자체

발전계획에 따라 특성화 분야 중심의 구조조정과 경영합리화 등의 자구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앞으로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대학이 지역산업과 연계하여 자발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중앙정부는 평가·지원하는 Bottom-Up 방식이 될 것이며 경쟁력을 갖추고 자체발전 노력을 적극 추진하는 대학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각 대학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원들이 기본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와 유사한 과정을 영리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일반학원과의 차별성에 대한 견해는?

현행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은 평생교육법 제25조에 의하여 대학의 총·학장 책임하에 대학 특성에 맞추어 설치·운영하도록 자율권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대다수 평생교육원이 기본설립 취지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동 교육원이 당초 목적을 벗어나 설치하는 등 원활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앞으로 각 대학에 영리위주의 운영은 자제하도록 하고 대학의 다양성 측면에 비추어 일반 사설학원과는 달리 각 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한다는 설립 목적 및 취지에 맞는 운영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손쉬운 재정확보 수단으로 이용되어 원래의 평생학습 취지를 벗어나고 있는 현재의 교육원 운영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현행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은 동 교육원의 기본설립취지에 맞게 대학특성을 살려 총·학장의 책임하에 설치·운영하도록 자율권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동 교육원이 본래의 설립취지에 반하여 재정확보 수단으로 설치장소를 확대하여 설치하는 등 영리위주의 운영 등에 대하여 우리 부에서는 각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에서 보고한 운영규정의 설치장소를 벗어난 시설운영 및 무리한 학습과정 설치 등을 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현장지도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崔榮熙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경쟁력 없는 대학은 자연적으로 폐교되고 경쟁력 있는 대학만 살아남도록 시장논리에 맡겨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인센티브를 통한 정원감축을 유도할 것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대학 간 통폐합, 즉 대학과 대학 간 구조조정은 동일 권역내에서 유사한 역할과 목적을 수행하는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통폐합하도록 유도하되 정부는 통폐합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대학 자율의 구조조정에 대해 적극 지원 하겠습니다. 통폐합이 이루어진 대학에 대해서는 예산과 교수·학생 정원 배정 등에 특별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대학 간 통폐합 사례

○국 립

－부산수산대와 부산공업대(산업대)→ '부경대학교'로 통합 (1996)

－통영수산전문대를 '경상대학교'에 흡수 통합 (1995)

－공주문화대(전문대)를 '공주대학교'에 흡수 통합 (2001)

○사 립

－성심여대와 가톨릭대→'가톨릭대학교'로 통합 (1995)

－대구가톨릭대와 효성여대 →'대구가톨릭대학교'로 통합 (1995)

－기독신학대학원대와 천안대 →'천안대학교'로 통합 (2001)

2005 수능 사회탐구 영역의 선택과목 '윤리'를 '윤리와 사상'으로만 표기하고 교과과정에 전통윤리를 적절히 안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은 교과를 개별과목으로 보다 세분화하고 학생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이를 선택하여 집중이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수능시험 사회탐구영역의 "윤리"는 제7차교육과정상 "윤리와 사상", "전통윤리"라는 각기 개별적인 특성이 있는 과목을 기본출제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능 출제 시 "윤리와 사상"을 중심으로 하고 "전통윤리"를 일부 안배하는 것은 제7차 교육과정에서 별도로 과목을 분리한 취지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윤리교과 교사들이 2005 수능 사회탐구 영역의 선택과목 '윤리'를 두개 이상의 과목으로 구분해 달라는 건의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부는 전문가 세미나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2001년 12월, 제7차교육과정을 반영하는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제7차교육과정상 '윤리와 사상' 및 '전통윤리' 과목은 각기 교육과정 이수단위가 4단위로서 수능 사회탐구영역 내의 다른 과목(6~8단위)과 비교하여 이수단위의 차이가 크므로 사회탐구영역 내 과목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과목은 다르지만 유사한 특징을 지닌 2개의 과목을 통합하여 "윤리" 과목으로 출제키로 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 수능시험 사회탐구 과목(괄호안은 이수단위수)

－한국지리(8), 세계지리(8), 경제지리(6), 한국근·현대사(8), 국사(4), 세계사(8), 법과사회(6), 정치(8), 경제(6), 사회·문화(6), 윤리(8)［윤리와 사상(4) + 전통윤리(4)］ 중에서 택 4 이내

※국사의 경우, 국민공통 기본교과이며 4단위임에도 불구하고 개별 과목으로 수능 선택과목에 포함한 것은 "한·일역사교과서" 문제와 관련하여 국사과목은 민족 정체성 확립 등 국민교육에 필수 불가결한 과목이라는 여론에 따라 포함.

(金敬天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지방대학 육성 전담부서 설치 시기 및 목적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지방대학 육성 전담부서 설치 및 활동 계획을 말씀드리면 늦어도 5월 초까지 정규 전담조직을 설치할 계획이며 그 이전까지는 과 수준의 태스크포스를 가동할 계획입니다.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유기적 협조하에 지방대학 육성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계획 심사·평가 및 관계법령 제·개정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쟁력없는 대학의 퇴출과 관련하여 대학퇴출 기준 및 시기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최근 대학입학 학생 수 격감에 따라 지방대학의 학생미달 현상이 지속되자 대학 간 통·폐합 등 자구책을 모색하고 있으나 현행제도는 대학법인의 자발적인 퇴출을 위한 법적 장치와 해산이나 파산의 경우 학교의 재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미비 등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부는 대학의 자발적인 퇴출경로와 해산·파산 시 학생 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만 대학퇴출은 학생·학부모·설립자·지역주민 등 당사자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안이므로 공청회, 입법예고 등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우리 부는 현행 제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정책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금년 말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시·도 교육청별 국가공인 민간자격 취득 교육공무원 중 선택 가산점 부여 현황 및 향후 계획은?

자격기본법 제27조에 따라 공인 민간자격 취득자는 국가자격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우리 부에서는 시·도 교육청에 공문으로 시행하고 부교육감 회의(02. 12 20)시에도 시·도 실정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안내한 바 있습니다.

조사결과 공인 민간자격을 취득한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선택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 교육청은 대전, 경기, 전북, 충북, 경북 등 총 5개 교육청입니다.

그리고 선택가산점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 교육청(9개 교육청)은 대부분 추후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가산점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서울·경남 교육청은 추후에도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참고로 교육공무원의 선택가산점 부여 여부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시·도 교육감이 기준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국가공인 민간자격 취득 교육공무원 중선택가산점 부여현황 및 향후계획>

교육청명	가산점 부여현황		향후 계획
	공인 민간자격명	부여내용	
서 울	없음	없음	없음
부 산	없음	없음	인사협의회 의견수렴 후 부여여부 결정
대 구	없음	없음	04. 1. 1 이후 승진규정 검토시 가산점 부여 종목 및 시기 등을 검토할 예정임
인 천	없음	없음	향후 의견수렴 후 가산점 부여 방향 모색
광 주	없음	없음	국가기술자격으로 한정함
대 전	• 문서실무사	• 일부 부여 • 1급(0.75점) • 2급(0.5점)	문서실무사 확대 적용을 추후 검토할 예정임
울 산	없음	없음	향후 인사자문위원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검토할 계획임
경 기	• 문서실무사	• 1급(0.75점) • 2·3급(0.5점)	
강 원	없음	없음	검토한 후 2004년도에 인정여부를 확정할 예정임
전 북	• TEPS	• 초등교사에 한함 • 800점이상(0.25점) • 677점이상(0.20점) • 600점이상(0.15점)	
전 남	없음	없음	승진규정 개정 시 가산점 부여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한 후 결정
충 북	• 워드프로세서 • 컴퓨터활용능력 • E-Test • PC활용능력평가시험 • 정보시스템감리사 • 인터넷정보검색사 • 문서실무사 • 컴퓨터운용사 • 네트워크관리사 • 정보기술자격시험	• 1급(0.75점) • 2급(0.625점) • 3급(0.5점)	담당과목 및 정보화 관련 자격증 취득에 대한 선택가산점의 폭을 점차 늘여나갈 계획임
충 남	없음	없음	추후 의견수렴 후 가산점 반영여부를 결정할 계획임

교육청명	가산점 부여현황		향후 계획
	공인 민간자격명	부여내용	
경 북 경북	• 컴퓨터활용능력 • 정보시스템감리사·인터넷정보검색사 • 워드프로세서 • E-Test • 네트워크관리사 • 정보기술자격시험·공무원정보이용능력평가 • 디지털정보활용능력	• 1급(0.75점) • 2·3급(0.5점)	
	• 정보화 관련외 민간자격	• 실과담당 교원으로서 실업계고교 근무경력에 한해 가산점 부여 • 1급(0.75점) • 2·3급(0.5점)	
경 남	없음	없음	향후에도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을 예정임
제 주	없음	없음	향후 의견수렴 후 결정

사학비리 전담 감사기구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설치시기와 설치 기준 및 인적 구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부에서는 투명한 사학 운영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금년 상반기 중에 감사관실 내에 별도의 “사학비리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하고자 구체적인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법인 임원 간 또는 임원·교직원 간에 발생하는 분규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사학분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설치에 대하여 금년 중 심도 깊은 연구와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설치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관련하여 서울의 인구집중지역의 학교부지 확보계획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부는 「7. 20 교육여건개선 추진계획」에 의거 서울시 교육청에 2001년부터 현재까지 75개교의 학교 신설, 1416개 교실 증축을 지원하여 학급당 학생 수를 2000년의 38.5명에서 2003년 4월 현재 34.8명으로 대폭 감축하였으나 인구과밀지역에 소재한 특정학교는 49명으로 교육과정 운영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는 대도시지역의 특성상 학교용지를 확보하기가 어렵고 지가앙등에 따라 학교신설 시 부지매입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시설비를 크게 상회(신설경비의 약 70%)하고 있어 교육여건 개선에 많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북지역의 경우 소규모 재개발, 다세대 주택 건축, 공장이전에 따른 주택건설 및 뉴타운 도시계획 발표로 특정지역에 학교 설립 소요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 가용할 수 있는 학교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의 해결을 위하여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자투리 땅을 이용한 소규모학교 신설, 동일부지 내 2개의 서로 다른 학교 신설 추진, 공원용지 내 학교 설립, 개발제한구역에 학교 설립 등을 위하여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하는 등 최대한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별첨 : 서울시 인구집중지역 학교부지 확보계획

【별 첨】

<서울시 인구집중지역 학교부지 확보계획>

○2001. 7.20 교육여건 개선계획에 의거 학급당 학생 수를 35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하여 2001～2004년까지 초·중·고 86개교의 학교신설을 추진 중임

○그러나 강북지역의 경우 소규모 재개발, 다세대주택 건축, 공장이전에 따른 주택건설 등 새로운 주거지역이 형성됨에 따라 과대학교 분리 및 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학교설립 소요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 가용할 수 있는 학교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대 책

－학교부지 확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일부지 내 2개학교수용, 기존 학교 내 신설학교 설립, 학교재 배치 등(11개교)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공원지역 내 학교설립, 개발제한구역 내 학교설립, 일반 주거 지역 내 학교설립 등을 위하여 서울시와 다각도로 협의 중임

□2003년도 기 추진학교 현황

1) 동일부지 내 2개학교 신설 추진현황

시도별	학교명	학급수	소재지	개교(예정일)	부지면적(㎡)	비고
서울	구촌초	22	서울 은평구 구산동	'05. 3	15,957	
	은맥고	24		'05. 3		
	염경초	36	서울 강서구 염창동	'04. 3	17,461	
	염경중	27		'05. 3		
	경동중	36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04. 3	24,609	
	성수고	30		'04. 3		
	쌍문중	24	서울 도봉구 쌍문동	'05. 3	21,059	
	쌍문고	30		'05. 3		

2) 기존학교내 신설학교 추진현황

시도별	학교명	학급수	기존학교명	소재지	개교 (예정일)	부지면적 (㎡)
서울	신당초	25	성동고	서울 중구 신당동	'04. 9	22,503
	체육중	3	체육고	서울 송파구 방이동	'04. 3	66,100
	신정고	24	영상고	서울 양천구 신정동	'04. 3	12,134

3) 재배치 학교 추진현황

시도별	학교명	재배치 학교명	소 재 지	개교 (예정일)	부지면적 (㎡)	비 고
서울	양화중	양평초	영등포구 문래동	'05. 3	13,590	양화중 이전 양평초 신설
	용마중	중용초	중랑구 면목4동	'05. 3	9,169	
	성수중	뚝섬초	성동구 성수1가1동	'05. 3	9,900	
	신진자동차 학원	신진초	은평구 응암동	'05. 3	11,975	신진자동차학원 이전후신진초신설

※신진자동차학원 측에서는 뉴타운지역으로 확정된 은평구 진관내동 304번지로 자동차학원이전 부지 확보를 요구하고 있음. 2003. 4월 현재 은평구청과 자동차학원 이전문제를 협의 중

□향후 학교부지 확보방안

1) 학교용지 신규지정요청

구분	초		중		고		계	비 고
	개소	학교명	개소	학교명	개소	학교명		
공원용지	6	중앙초, 등마초, 양일초,능동초, 용왕초, 의릉초					6	
개발제한구역	2	길명초, 거마초	1	거마중	3	(선사고 강명고 마천고)	6	'03. 3. 15 공람공고
주거지역	4	낙산초, 목운초, 송원초, 수오초	1	목운중 (상덕중)	1	(한산고)	7	
소계	12		3		4		19	

※ ( )는 2006이후 학교설립계획

2) 추진경과

○2001. 10월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반영요청(서울시 공원녹지과)

○2001. 11월 : 도시계획시설 결정 협조요청(서울시 시설계획과)

○2002. 1월 : 도시계획시설 결정 2교(마장초·중)

○2002. 5월 : 개발제한구역 6개교는 각 자치구청과 협의 완료 후 서울시 공원녹지과에 통보(길명초, 거마초, 거마중, 선사고 강명고 마천고)

○2002. 10. 4 : 서울시청-교육청 정책협의회에서 협조요청

○2002. 10. 17 : 교육지원국장, 행정과장 서울시 방문 도시계획국장, 시설계획과장, 담당팀장과 협의(서울시에서 관계부서와 최대한 협의하여 학교 용지 신규지정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함)

○2002. 10. 24~10. 25 : 학교용지 신규지정을 위한 서울시, 교육청, 자치구청, 지역교육청 담당과장 실무 협의

○2002. 11. 13 : 학교용지 확보요구에 대한 추진계획 통보(서울시→교육청)

－임상이 양호한 공원용지 1개소(용왕초), 기타 1개소(수오초) 도시계획 입안 불가

－남산타운 인근 중앙초(테니스장) 설립예정지는 보류

○2002. 1월 : 도시계획시설 결정 1교(노유초)

3) 향후 추진계획

○현재 공원용지 3개소, 기타 지역 6개소는 입안요청

－공원용지 : 양일초, 등마초, 능동초

－주거지역 : 낙산초, 목운초·중, 송원초, 한산고 상덕중

○개발제한구역 6개소 관리계획(안) 공람공고 완료 후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예정

(金貞淑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청소년사이트의 성인광고 단속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과 인터넷 게시판이 광고 선전물에 포함되도록 청소년보호위원회와 협력할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사이버상에서의 청소년 보호 문제는 정보통신부, 청소년보호위원회 등 관련 부처 간 공동 협조 및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는 지난 해 정보통신부 등 3개 부처와 공동으로 '사이버상에서의 청소년문화 종합대책'('02. 1)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입간판, 벽보 등을 통해 공개된 장소에서 광고하는 행위는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제하고 있으며 인터넷 게시판 등 인터넷상의 공개된 장소를 통한 광고에 대해서도 규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청소년유해사이트는 인터넷 게시판 등에

게시, 배너광고 등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부도 이러한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 관련법령>

※청소년보호법 제20조(광고선전 제한) ①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7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 입간판, 벽보, 전단,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선전물은 이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방법으로 공공연히 설치·부착·배포하여서는 안됨

1.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외의 업소
2.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
3.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이 없는 컴퓨터 통신

⇒위 조문에서의 제7조제7호의 규정은 옥외광고물 중심의 상업적 광고선전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인터넷 등의 매체물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그러므로 청소년보호법 제20조 광고선전 제한 규정에 적용되는 매체물의 범위에 인터넷 관련 매체물이 포함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개정이 필요함

기숙학원이 불법인지 합법인지에 대한 입장과 불법이라면 불법의 구체적 내용은?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학원의 편의시설은 학원의 설립목적을 실현하는데 기여하는 부대시설로서 학습자로부터 별도의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학원 측에서 학습자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학원의 기숙시설은 편의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이므로 우리 부에서는 90년 3월 이후 학원에서 기숙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기숙학원에 대해서는 설립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지난 02년 10월에는 학원 외의 시설을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기숙학원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 동 법률 제6조(학원설립·운영의 등록) 및 제22조(벌칙)에 의거 허위로 등록한 경우에는 형사고발이 가능하다는 지도 공문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1) 기숙학원에 대한 인가기준과 절차는? (2) 1990년 이후 기숙학원 신설을 허가해 준 사실이 있는지와 기숙학원 운영조건의 내용은 무엇인지?

80년대 당시 입시학원으로 등록·운영하던 일부 학원에서 사회적으로 입시 과열경쟁 분위기를 타고 기숙사 및 식당시설을 추가로 갖추어 수강생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하면서 수강료, 기숙사비, 식비 등의 명목으로 고액의 경비를 징수하여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당시 이러한 기숙학원이 가장 많은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기숙학원을 방치하기 보다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관리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나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여 기숙사 정원 및 시설기준, 수강료 징수 한도액 등 합숙형태 학원운영 개선방안을 91년 2월 마련하여 기존 합숙형태 학원 중 기준에 적합한 학원은 인정하여 주고 그 이후로는 신규설립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운영조건에 대한 사항은 인쇄하기에는 분량이 많아 요구하신 위원님에게만 1부 제출합니다.

1990년 이후 기숙학원 관리감독 지침의 내용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인쇄하기에는 분량이 많아 요구하신 위원님에게만 1부 제출합니다.

폐교 대부행정에 있어서 불필요한 서류발급(토지사용승낙서)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폐교재산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방안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조사한 결과 폐교재산 매각은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추진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매각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그 사용 승낙을 받아 축조하는 경우” 등 법령이 정한 경우 외에는 폐교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는데도 제천교육청이 매각계약 체결 전 임차인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하여 시설물 축조가 가능하게 한 것은 관련법령 입법 취지에 배치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부는 이러한 사실을 해당교육청에 통보하여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와 같은 위법·부당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부 및 시·도 교육청 자체감사시 폐교재산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폐교재산 매각과정의 투명성과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한 대책은?

일반적으로 폐교재산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최고가액을 제시하는 자에게 임대 또는 매각하도록 하고 있으며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 등에서 정한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매각계획을 일간신문 등에 30일 이상 사전 공고토록 함으로써 매각절차상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취지를 적극 반영하여 폐교재산 매각·대부 시에 법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공정성·투명성이 더욱 확보되도록 함은 물론 폐교재산 관리상의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한 대책을 폐교재산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폐교재산 매각·대부 관계법령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령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

3. "敎育用"이라 함은 幼兒·靑少年·學生 및 住民등의 學習을 主目的으로 하여 自然學習施設·靑少年修練施設·圖書館·博物館등의 用途로 제공되는 경우를 말한다.

第4條 (廢校財産活用計劃등) ①敎育人的資源部長官은 廢校財産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廢校財産活用基本計劃을 수립하여야 한다.

第5條 (貸付등에 관한 特例) ①敎育監은 廢校財産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또는 地域住民을 위한 福祉施設로 활용하고자 하는 者에게 貸付하는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廢校財産을 隨意契約에 의하여 貸付 또는 賣却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廢校財産을 貸付하는 경우 그 貸付料率·貸付期間 및 價格評定등에 관한 사항과 賣却하는 경우 그 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6條 (永久施設物의 축조) ①敎育監은 廢校財産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寄附 또는 自進撤去를 조건으로 貸付받은 廢校財産에 永久施設物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

제3조 (수의계약에 의한 대부 및 매각 등)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용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2. 폐교일 이전 5년 이상 당해 폐교의 통학구역(通學區域) 또는 중학구(中學區)안에 거주하여 온 자가 주민복지시설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3.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호 또는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 또는 문화산업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5. 당해 폐교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부하였던 자(그 배우자 및 자녀를 포함한다)에게 대부 또는 매각하는 경우
6. 폐교부지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대부 또는 매각하는 경우

⑤교육감은 폐교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당해 매각계획을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 (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외의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유재산에 건물, 구거·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1. 기부를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2.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재산의 무상사용·수익허가를 받기 위하여 축조하는 경우
3.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공익상 필요하여 3년 이내의 기간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를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기부 또는 원상회복할 것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5. 제88조제1항제16호·제22호 또는 제2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당해 대부기간의 만료시 그 대부받은 재산의 매입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6.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그 소유권이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축조하는 경우

7. 매각·양여·교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그 사용을 승낙받아 축조하는 경우

기숙학원을 양성화 할 것인지 전면 금지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과 미비된 관련법의 정비 계획은?

지난번 예지학원 화재사건을 계기로 우리 부에서도 소방점검을 누차 강조하고 있으며 지역교육청에서도 매년 기숙학원에 대하여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가차원에서 시·도와 합동으로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진행 중이며 기숙학원이 가장 많은 경기도 교육청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점검한 바 있습니다.

우리 부는 90년 3월 이후 기숙학원의 신설을 불허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설학원의 경우에는 화재위험, 급식사고 등을 포함하여 교육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기숙시설 설치를 불허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관계법령에 위반된 학원에 대하여는 엄중히 조치토록 하겠으며 기숙학원을 근원적으로 설립·운영할 수 없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률적인 규제중심의 학원법을 미성년 대상학원은 규제중심, 기술계 학원 등 성인대상 학원은 자율확대 방향으로 개정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중임 (직능원, 03. 2~9월)

(朴昌達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학교급식 위생사고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과 급식업체 관리감독제도 수정 방안 및 2004년도 식중독 방지대책의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학교급식 위생사고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급식시설의 현대화 및 안전한 식재료의 사용,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준수, 조리작업 과정상의 철저한 위생관리 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위탁급식업체에 대한 위생관리 감독제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우리 부가 국무총리직속 '식품안전관리대책협의회'를 통해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위탁급식영업' 업종 신설을 적극 건의하여 2003. 4월중 공포할 예정으로 있으며 현재 자유업인 위탁급식영업이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게되어 보다 엄격한 관리기준을 지켜야 하고 교육청의 점검결과 위생규정 위반 시는 관할 시·군·구에 통보하여 벌칙을 부과하게 되므로 위생감독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4년도 식중독 방지대책'은 지난 3월 서울시내 위탁급식 13개교의 집단식중독 사고 발생에 따른 후속조치로 서울시 교육청에서 금년에 정책연구를 거쳐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임을 답변 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학교급식 운영방안 연구
－연구기간 : 2003. 5월~10월(6개월)
－연구기관 : 한국교육개발원

의무교육인 중학교의 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할 때 비용을 학부모에게 전가하는 것에 대한 의견과 위탁급식 이유가 식중독 사고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인지 급식관리기준이 흔들리고 있는데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전체 중학교 2810교 중 88.7%인 2492교에서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운영형태별로는 직영급식 1692교(70%), 위탁급식 800교(30%)이고 위탁급식은 교내에 급식시설을 갖춘 운영위탁이 571교(71.4%), 학교부지협조 등으로 시설을 갖추기 어려워 외부 운반급식을 하는 곳은 229교(28.6%)입니다. 위탁급식 계약기간 만료 시 직영으로 전환할 경우 급식시설이 있는 571교는 시설비가 필요 없으나 급식전담직원인 영양사 인건비는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서 교육감이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편 위탁급식은 급식비를 부담하는 학부모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결과이며 위생사고 발생 시의 책임과 업무부담 및 인건비 등의 예산부담 과중을 이유로 교육청과 학교장은 위탁급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급식관리기준이 흔들리지 않도록 학부모 참여를 확대하고 위탁급식의 직영전환을 적극 유도하는 등 보다 교육적이고 안전한 급식이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학교급식에 우리농산물 사용에 대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학교급식에서 우수하고 안전한 우리농산물을 사용하여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자는 기본취지에는 찬성하지만 우리 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

기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쌀, 야채류 등 국내 생산이 충분한 식재료는 이미 국내산을 사용하고 있으나 육류, 콩류 등 일부 식재료는 국내 생산량 부족으로 원활한 수급에 어려움이 있으며 국제적인 상품무역을 규율하는 GATT 제3조는 상품무역에 있어서 내·외국산간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원칙에 따라 국가 간 통상마찰의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식단 작성 및 식재료 선정·소비처인 전국 1만여 학교단위에서 식재료 검수시 국내산 여부에 대한 판별이 실질적으로 곤란하고 가격이 비싸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점이 있으나 앞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교육적으로 우리 농산물 사용을 확대하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우리 농산물 사용을 제도화하는 문제는 WTO 협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식량정책 주무부처인 농림부가 외교통상부 및 우리 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인권위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 교원업무 경감과 관련된 세부업무를 제외한 나이스 전반에 대한 정리된 입장은?

국가인권위의 결정에 앞서 우리 부는 교원, 학부모, 법률전문가 및 IT 전문가 등 여러 단체로 구성된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를 구성하여 보건일지외 3개 업무의 NEIS 제외, 졸업생 학교생활기록부 NEIS상 관리 기간 최소화, 학부모 인권보호관련 기재사항 중 직업을 삭제하고 성명, 생년월일만 입력하는 등 외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으며 국가인적위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 중 “12.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항목 및 학생건강기록부 항목의 수정·삭제 등은 전문가 협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교육부에 일임하였습니다.

향후 국가인권위의 결정을 적극 수용함은 물론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여러 단체의 의견을 수렴 및 검토하여 수용토록 하고 NEIS 시행 이후 현장에서 제기되는 쟁점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나갈 것이며 아울러 인터넷 자문단을 활용하여 일선 현장의 NEIS 운영을 지원토록 하며 시·도 업무담당자 연수 및 지도 차원의 방문 점검을 실시 일선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조기 안정화 및 활성화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尹景湜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현재 양대 교원단체의 반목은 극심해서 서로 간에 타협과 양보가 아닌 투쟁 일변도로 변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그 동안 교육부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구체적인 실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전교조와 한국교총의 경우 조직의 기본 이념과 구성원의 가치관 차이 등으로 다소간의 마찰은 불가피하다고 생각되어지나 지금처럼 투쟁일변도로 변해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에서는 교원단체 간의 갈등해소와 이해는 상호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때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부에서는 지난 1월 교직단체, 교육전문가와 우리 부가 참여하는 집단토론회(Group Discussion)를 개최하여 서로의 갈등을 해소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하였으나 해당 단체들의 사정과 제반 여건이 미흡하여 이를 연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부에서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교육공동체 정책협의체」네트워크를 형성 운영하여 교직단체와 얼굴을 맞대어 우리나라 교육발전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가질 계획이며 학부모, 교육현장 구성원, 교육전문가 등의 목소리도 최대한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유관단체들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것이 교육행정을 펼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이러한 대립을 감소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들을 구상 중에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교육유관단체들의 다양한 의견표출은 건전한 교육정책 수립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도를 지나친 극한적인 갈등현상은 우리 교육의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부에서는 금번 사태와 같은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교육공동체 정책협의체」네트워크를 형성 운영하여 교직단체와 교육행정당국, 교원노조와 교총 간, 교직단체와 학부모 등이 서로 만나 우리 교육을 위해 진지한 토론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특히 교직단체 상호간에도 비타협적인 투쟁보다는 양보와 협조 속에 우리 교육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는 관계가 유지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 교육부가 파악하고 있는 교사 부족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러한 문제가 몇 년간이나 계속되고 있는데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 이유는?
(2) 교사부족이 명백한데도 무리하게 땜질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경위와 직접적인 문제 해결책은?

99년 교원정년 단축 이후 명예퇴직자의 증가, 교육여건개선사업, 교대생들의 농·어촌지역 근무기피, 경기도의 인구급증 등으로 인해 교원이 부족하게 되었으며 교육대학을 중심으로 한 1:1 양성체제에서는 수요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부에서는 교대편입생 비율 확대(5%→20%), 교육감추천 편입제 시행(2500명)등의 조치를 취하여 2004년 이후에는 교원수급이 점차 균형을 이루어나갈 것으로 전망되며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초등교원 중·장기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안정적인 충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초등교원 중장기수급계획에 대한 정책연구(02. 6~03. 2)

*초등교육발전위원회 구성·운영(02. 2~현재)

기간제 교사는 정규교사에 비해 근무조건이 매우 불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견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향후 계획은?

기간제 교사는 정규교사와는 달리 계약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자이므로 근본적으로 정년까지 그 신분이 보장되는 정규교사에 비해 근무조건이 부분적으로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계약기간 동안에는 그 신분과 보수를 정규 교사와 동일한 근무조건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시·도 교육청에 독려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는 예산상의 이유로 보수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부는 기간제 교사가 계약기간 동안 보수 및 근무조건 등에 있어 정규교사와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그 실적을 시·도 교육청 평가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기간제 교사의 경우도 임용 시 사전연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현재 교원임용 시 신규교원에 대한 연수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간제 교원의 경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전연수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부에서는 기간제 교원에 대하여도 임용전 일정한 연수를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일정기간(1학기) 이상의 기간제 교원에 대하여는 신규교원 임용연수에 준하는 최소 30시간 이상의 연수를 이수토록 하고 연수과정은 교과지도, 생활지도 등 학교현장 적응에 필요한 실질적 내용으로 편성·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도 교육청과 협의하여 기간제 교원 임용 시 일정한 연수를 이수한 자를 우선 임용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여 나가겠습니다.

지방대학 육성 전담부서 설치 및 활동 계획과 위기에 처한 지방대학에 대한 실질적 대책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방대학이 인재유출과 취업기회의 상실 등 경쟁력을 잃어 가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방대학 육성 전담부서 설치 및 활동 계획을 말씀드리면 늦어도 5월 초까지 정규 전담조직을 설치할 계획이며 그 이전까지는 과 수준의 태스크포스를 가동할 계획입니다.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유기적 협조 하에 지방대학 육성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계획 심사·평가 및 관계법령 제·개정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방대학 정원 미충원으로 인한 위기는 대학이 백화점식 학과 설치 등 양적 팽창에 주력해 왔고 취업기회 등의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대학이 경쟁력을 잃은 데 기인하므로 대학정원 동결, 편입학제도 재검토 및 대학설립준칙주의 개선 등의 단기적 대책과 함께 대학의 교육·연구의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발전의 중심체로 육성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국립대학 육성 방향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국립대학은 국가 정책적 필요에 의한 인적자원의 개발, 학문의 균형 발전을 위한 기초 및 보호

학문 분야의 육성, 고등 교육에 대한 지역별 균등한 기회 보장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나 지역거점 대학의 역할에 대한 지역사회 요구로 인한 백화점식 학과 개설로 사립대학과의 차별성이 뚜렷이 부각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방대학 육성 사업과 연계하여 국립대학 발전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시장 원리로 해결될 수 없는 기초학문 분야의 육성, 이공계 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 IT·BT 등 국가전략분야 등을 집중 육성하고 국립대학들이 학과 통·폐합과 자체 혁신을 통해 사립대학과 차별화된 역할과 기능을 수행 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大韓民國學術院事務局長 鄭永宣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부분>

(尹景湜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학술원 회원 정원 150명 편성과 분과 편성에 관하여 (1) 학술원 회원 선출절차와 결원이 10인이나 발생한 이유 (2) 학술원 회원 정원 150인이라는 인원제한은 사실상 종신제로 운영되는 학술원에서 신규회원 영입에 큰 장애가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 (3) 학술원 부회별 분과를 11개 분과로 운영되는 것은 발달하는학술분야의 세분화에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학술원 회원 선출절차와 결원이 10인이나 발생한 이유

학술원 회원 선출은 대한민국학술원법 제5조 및 학술원 회원선출에관한규정 제4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학술원 회원 선출 과정은 매년 초에 신규회원 선출계획(1월)을 수립하여 2월 임원회의와 분과회의에서 분과별 결원에 대한 전공분야를 확정하고 해당학회에 추천을 받아 결원 인원(7인)에 대한 회원을 선출키로 계획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각 분과회의에서 신규회원 후보자를 추천할 학회를 지정하였으며 5월 20일부터 23일 사이에 회원심사위원회(각 분과회)를 거쳐 부회(7월11일)의 선출과 총회(7월 11일)의 승인을 거쳐 추천 후보자중 10인을 신규회원으로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해당학회로부터 신규회원 후보자 추천서를 접수하는 중이며 참고로 접수기간은 2003. 4. 30일까지입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결원(10인) 발생 이유는 연로하신 회원들의 작고로 인하여 발생한 결원이며 회원선출계획 확정이후 작고하신 회원으로 인한 결원은 2004년에 보충할 계획입니다.

□학술원 회원 정원 150인이라는 인원제한은 사실상 종신제로운영되는 학술원에서 신규회원 영입의 장애 여부

대한민국학술원법 제3조 제2항에 학술원 회원의 정원이 150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많은 학문분야에서 우수한 학자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학문의 세분화와 대학교수의 증원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회원의 정원을 대폭 늘려 다양한 학문분야의 신진학자들이 회원으로 참여 할 수 있는 문호를 넓혀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학술원 회원 정원에 대한 기초연구를 실시하고 학술원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이를 바탕으로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하여 증원계획을 확정하여 대한민국학술원법 개정을 통해 정원을 증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학술원 부회별 분과를 11개 분과로 운영되는 것은 발달하는 학술분야의 세분화에 장애요소가 될지 여부

현재의 분과구성은 1954년 학술원 개원 시부터 정해진 이래 그동안 몇 차례의 조정이 있었으나 큰 틀은 별로 변하지 않고 있어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경직성으로 인해 학문의 세분화의 경향을 적절히 반영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회원의 전체 정원이 확대되지 않고는 각 분과 및 분과별 전공분야의 조정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회원 정원의 확대를 추진하면서 이와 함께 분과 및 분과별 전공분야의 조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학술원 회원의 오랜 연구경력과 학식을 살려 학술세미나 정책토론회 등을 자주 개최하여 학술발전 및 정책입안에 기여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학술원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의 적절하신 지적에 공감하며 학술원은 그 동안 매년 국제학술대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한국의 학술연구, 학술원논문집 등을 발간하

여 정부기관, 대학 및 공공도서관에 배포하는 등 우리나라의 학술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학술원이 주최하는 정책토론회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개발, 정부기관에 건의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회원들이 관련 학회나 정부의 각종 정책자문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책입안에 기여해 왔습니다.

앞으로 회원의 학술연구비를 증액 지원하여 보다 우수한 학술연구 및 정책연구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술세미나 정책토론회 개최 시기, 횟수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학술발전 및 정부의 정책건의 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國史編纂委員長 李成茂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부분>

(尹景湜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국사편찬위원회의 정원운영과 관련하여 물으셨습니다.

2003년 4월 현재 우리 위원회의 정·현원 현황은 정원 79명에 현원 81명으로 2명이 별도정원인 상태이며 그 사유는 각각 파견 1명(교육연구관)과 휴직 1명(편사연구사)으로 인한 결원보충입니다. 결원보충의 근거는 파견자 1명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2항과 공무원임용령 제42조제1항 및 재외국민의교육에관한규정 제16조, 휴직자 1명의 경우 같은법 제43조제1항에 의거한 결원보충입니다. 「2003년도 공무원인사실무(중앙인사위원회)」에 의하면 "결원보충은 휴직·파견 등으로 인한 업무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조직관계 법령상의 기관별 정원관리원칙에 예외를 인정하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사 편찬과 관련하여 물으셨습니다.

한국문화사 편찬사업은 2003년도 신규 주요사업으로 신청하였으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아 자체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획예산처에서 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신편 한국사 간행사업이 2002년도에 종료됨에 따라 이 사업비를 이어받아 사업을 수행하면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이 사업을 자체사업비로 추진하는 경우의 문제점은 사업규모와 기간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전체 간행책수는 그대로 두지만 수록항목을 조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부내용에 있어서는 축소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예산항목은 모두가 일반수용비(201-01)로 구성되어 있어서 도판·사진·그림 등이 많이 들어가는 문화사의 특성상 원고료의 지급만으로는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문화사와 관련해 아직 미개발된 분야나 새로운 근현대 문화에 대한 연구 지원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총 사업비와 경비조달 대책으로는 총 사업비는 약 22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비조달 방법으로 다른 기본사업 가운데 마무리되는 사업의 사업비를 이 사업에 중점 투입하는 방안 출판사를 선정해 한국문화사를 출판·간행하게 함으로써 부족한 간행비를 충당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미 2000년도부터 이 사업을 2002년에 종료될 신편 한국사의 후속사업으로 기획하여 왔으며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충분한 준비작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① 2000. 8. 20 : "문화사 : '문화의 역사'에서 '문화로 보는 역사'로" 라는 주제로 특강
② 2000. 8. 18-19 : 역사학회와 공동으로 2000년도 역사학회 여름 심포지움을 "지역사 연구의 이론과 실제"라는 주제로 개최
③ 2001. 2. 23. : 각계의 전문학자 10인을 모신 가운데《한국문화사》편찬사업 준비회의 구성. 이후 4회의 편찬사업 준비위원회의 개최
④ 2001. 6. 29 : "한국문화사, 어떻게 서술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세종문화회관 컴퍼런스홀)
⑤ 2002. 6. 7 : "한국문화사의 체계와 방향설정을 위한 기초 연구"라는 주제로 세미나 개최(한글회관 대회의실)
⑥ 2002. 12. 20 : "해외 각국의 문화사 목차와 한국문화사 편목(시안)의 비교"라는 주제로 세미나 개최(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세미나실)
⑦ 2003년 2차례의 분과위원회 개최
⑧ 한국사 연구지원비에 이 사업 연구를 포함시켜 한국사연구회(2002년), 고려대 조광교수 연구팀(2002년)에 지급, 한국문화사 목차 및 수록 항목 등을 연구하게 함.

위와 같이 우리 위원회는 전문학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장기 사업계획을 세워 이 사업을 추진 중이고 문화사관련 학술회의와 세미나활동을 각 언론사에 홍보하여 관심있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바 있으며 이러한 사항들이 주요 언론에도 보도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연구 노력하여 홍보와 사업추진 등에 있어 원활한 업무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敎員懲戒再審委員長 鄭相煥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부분>

(尹景湜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교원징계재심위원회 위원이 5인으로 구성된 사유 및 향후계획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위원은 98년도 직제개정 이후 7인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 2월 및 3월 비상임위원 중 2인의 임기가 만료되어 신규 임용을 제청한(교육인적자원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상태이기에 2003. 4. 14. 현재 5인(위원장, 상임위원 1인, 비상임위원 3인)으로 운영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5인의 위원으로 운영되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며 비상임위원 2인이 임용되면 7인의 위원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재심청구사건 인용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교원징계재심위원회 위원장의 생각과 대책은?

우리 위원회가 개원한 1991년부터 2003. 3. 31. 까지의 평균인용률은 43%이며 연도별 인용률은 첨부된 “연도별 인용률 변동이유표”와 같습니다.

그리고 재심결정 인용률에 연도별로 변화가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해당연도에 합법화되기 전의 전교조와 관련된 사회적인 문제나 서원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태와 같은 사학분쟁 등이 발생하여 많은 징계처분이 이루어졌을 때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와 같은 징계처분에 대하여 당시 법규정에 따라 기각결정을 하거나 편파적 징계에 대해 취소 등의 인용결정을 함으로써 전체적 인용률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999년부터 2002년까지의 인용률을 보면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원대학교 등 학내분쟁으로 특별히 인용률이 높았던 1999년도를 제외하고 2000년, 2001년, 2002년도의 인용률은 평균인용율 43%와 불과 2~6%의 차이를 보일 정도로 인용률이 오히려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43% 내외의 인용률이 가장 적정한 수치라고 단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원지위향상을 위한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우리 위원회는 목적이 교원의 신분보장과 지위향상 도모인 만큼 항상 위법·부당하게 교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건 한 건 한 건에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우리 위원회에 대한 교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심청구사건에 대한 공정한 결정을 위한 노력은 징계 등 처분과 관련된 사건의 철저한 사실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다른 징계관련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사건발생의 정황을 폭넓게 살펴 교원이 참작 받지 못하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유사한 징계사유와 관련된 판례를 조사·검토하고 징계처분에 대한 양정의 공정성을 위해 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정 등 각종 법령의 올바른 적용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원에 대한 불리한 처분의 예방을 위한 노력은 각 교육행정기관과 학교법인 등 처분권자가 교원들에게 부당한 처분을 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재심결정내용을 사례별, 처분내용별로 분류하여 결정문집을 발간·배부하고 있으며 2003년도분 결정문집(제12집)은 5월 경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재심제도안내서 등 각종 홍보물을 통해 재심청구제도와 재심결정 인용률 등을 교원과 처분권자에게 알려 부당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3년부터는 교원이 직접 우리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재심사건 및 중앙고충심사사건의 결정서를 유형별로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원에 보다 많은 자료를 제공하고자 현재 홈페이지 보강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인용률 변동이유표>

연도별	접 수	인용(취소·변경)	기각	각하·취하	계	인용률(%)	변 동 이 유
91	84	19	17	23	59	32	○전교조와 관련된 7건을 기각하여 인용률이 낮음.

연도별	접 수	인용(취소·변경)	기각	각하·취하	계	인용률(%)	변 동 이 유
92	138(25)	30	56	45	131	23	○전교조와 관련된 25건을 기각하여 인용률이 낮음.
93	246(32)	127	56	42	225	56	○사학분쟁과 관련된 목포 신명여자상업고등학교 40건, 인천전문대학 7건, 대구대학교 7건을 취소 또는 변경하여 인용률이 높음.
94	225(53)	105	69	89	263	40	
95	199(15)	52	52	99	203	26	○'서울교사 100인선언'사건과 관련된 6건, 사학비리와 관련된 경기여자상업고등학교 7건을 기각하고 집단서명등과 관련한 경고 등 취소청구가 51건 각하되어 인용률 낮음.
96	133(11)	52	19	45	116	45	
97	149(28)	58	72	38	168	35	○전교조와 관련된 10건, 사학분쟁과 관련된 경북 김천고등학교 4건, 전남지역 교재채택료 수수와 관련된 청호중학교 등 10건을 기각하여 인용률이 낮음.
98	321(9)	132	87	66	285	46	
99	187(45)	128	44	41	213	60	○사학분쟁과 관련된 금성초등학교 9건, 한국외국어대학교 30건, 서원대학교 8건을 취소 또는 변경하여 인용률이 높음.
2000	206(19)	91	28	67	186	49	
2001	185(39)	87	38	64	189	46	
2002	181(35)	91	63	50	204	45	
2003	36(12)	8	2	7	17	47	
합계	2,290	980	603	676	2,259	43	

※ ( ) 안은 전년도 이월건수

○國際敎育振興院長 吳聖三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부분>

(尹景湜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국제교육진흥원의 홍보활동과 관련하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붙임과 같습니다.

【붙임】

1. 홍보판·홍보 자료실 설치 및 홈페이지·전자우편 주소변경을 통한 홍보

국제교육진흥원의 고유업무에는 유학상담, 모국수학생 교육, 일본공대 유학생 선발관리, 국비유학생 선발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연중 국내외의 민원인 및 내방객의 왕래가 끊이지 않기에 국제감각에 맞는 홍보판, 홍보자료실을 설치하여 홍보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의 홈페이지·전자우편·한국어교육 정보시스템·유학안내의 도메인 이름이 복잡하고 기억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단순하고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도메인 이름으로 변경함으로써 사용자 친화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2. 일간신문, 공중파 방송, 교육관련 신문 등을 통한 홍보활동

국제교육진흥원은 국제교육·교류 협력을 위한 국내 유일의 국가기관으로서 기사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최소의 경비로 언론기관에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충분히 기사화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재외공관(교육담당 영사, 교육관, 교육원장)과 긴밀한 네트웍을 통하여 양질의 기사를 발굴하여 언론매체에 제공하고 각종 홍보물 및 보도자료를 주기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 공보관실, 연합뉴스 등 언론사에 배포하여 기사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지금까지의 홍보활동 및 향후 추진 대책

인터넷 홈페이지의 대화방 및 한국어 교육정보 시스템을 통한 적극적인 쌍방향 홍보를 하였고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여 전 재외공관(한국학교, 한글학교 포함), 주한 외국공관, 국내외 유관기관에 배포하였으며 해외 유학 박람회를 통하여 홍보활동을 하였습니다.<붙임 참조>

향후 추진대책으로는 그동안의 해외 및 관련기관 중심의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국내 홍보효과가 큰 일간신문 및 공중파 방송에 양질의 기사를 주기적으로 제공하며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 등 새로운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운영의 개선 등을 통하여 참여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부'의 취지에 맞는 홍보활동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붙임 2002~2003 홍보업무 활동내역 1부.

<2002~2003 홍보업무 활동내역>

홍보업무	활동내역		비 고
	수 량	주요 배포처	
홈페이지 운영 한국어교육정보시스템 (KOSNET)	1,235,641회 접속 75,606회 접속 (영어권 57,682회) (일어권 5,035회) (중국어권 12,889회)		2003. 4. 현재 2002. 12. 현재
국제교육진흥원Plaza (소식지 통권 2, 3호)	1,200부X2회	재외공관 (한국학교, 한글학교 포함) 책임운영기관 및 유관기관	
국제교육진흥원 (Leaflet)	10,000부	〃	
국제교육진흥원(CD, Video)중국어판	100개	재외공관(중국) 유관기관	국문, 영문, 일문은 기배포
Education in Korea(영문판)	6,000부	재외공관 (한국학교, 한글 학교 포함) 국내대학 및 유관기관	
Study in Korea 2002	9,100부	주한외국공관 외국인유학생 및 유학담당자	
Graduate schools in Korea (책자, CD)	1,200부 5,000개	주한외국공관 외국인유학생 및 유학담당자	
Dynamic Korea (포스터)	200부	유학박람회	
재외동포 모국수학생모집 안내	3,000부	재외공관 (한국학교, 한글학교 포함)	국문, 영문, 일문
한국어교육정보시스템 안내(KOSNET)	500부	〃	

홍보업무	활동내역		비 고
	수 량	주요 배포처	
Guidebook for the year 2002 Korean Government Scholar-ship students	150부	외국인 유학생 재외공관(초청 대상국)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명부	300부	국내 기업체	
Program Policies Guidelines for the year 2003	200부	재외공관(유학생 초청국)	

○國立特殊敎育院長 朴慶淑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부분>

(尹景湜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장애학생 통합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초·중등 일반학교 관리자 및 교원들의 장애학생 이해 및 인식제고를 위한 연수기회 확대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원에서는 특수교육 담당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뿐만 아니라 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반학교 관리자, 교사들에 대한 연수를 집체연수 및 원격연수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으며 향후 장애인에 대한 바른 이해제고와 장애인에 대한 그릇된 편견해소를 위하여 일반학교 관리자 및 교원들의 장애학생 이해 및 인식제고를 위한 연수를 보다 확대할 계획이며 통합학급 담당교원들의 장애학생 지도능력 제고를 위한 연수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원의 연수시설로서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원은 특수교사와 더불어 일반학교 관리자 및 교원들에 대한 특수교육 연수기회를 보다 확대하고 연수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청사를 확장 이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수관련 내용에 대한 답변은 붙임과 같습니다.

※붙임 : 국립특수교육원 연수현황, 과제 및 대책

【별첨】

국립특수교육원 연수현황, 과제 및 대책

□통합교육 연수 현황

우리 원에서는 일반학교 관리자(교장 및 교감)들의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가 장애학생 통합교육 촉진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인식하고 2001년도부터 특수학급 설치교 교장과정에 일반학교 교장을 포함하여 연수과정을 개설하여 왔음.

2002년 12월 말 현재 초·중등 특수학급 설치교 교장의 수를 특수학급 수와 동일한 3953명으로 추정할 때 2003년도 연수 대상인원 303명은 총 대상인원의 7.7%임.

1997년부터 2003년 3월 말 현재 2363명의 특수학급 설치교 교장이 직무연수를 이수하여 총 대상인원의 59.8%가 이 과정의 연수를 이수하였음.

□과제

특수교육 연수에 대한 요구는 증대되고 있으나 우리 원의 시설 및 예산의 제한으로 특수교육 연수 희망인원의 22% 정도만이 연수대상자로 선정되고 있어 연수 수요자들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대책

향후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 및 통합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일반학교 교장(감), 교사, 학부모 연수과정을 확대 편성·운영할 계획임.

(다음 페이지에 계속)

【참고자료】

<1994~2002 연수 실적>

2003년 3월 31일 현재 (단위 : 명/백만 원)

연도	종 별	과정수	연 수 대 상	이수시간	계획	실적	%	예산
1994	일반연수	4	특수학교(급) 교사	60	432	430	99	125
	자격연수	2	특수학교(급) 2급 정교사	180	192	190	99	
소 계		6			624	620	99	125
1995	일반연수	7	특수학교(급) 교사	62	540	573	106	138
	자격연수	1	특수학교(급) 2급 정교사	182	110	110	100	
	직무연수	1	특수학교 주임교사(부모교육 담당자)	32	53	52	98	
	보수교육	1	특수학교 교장(감)	180	30	28	93	
		1	특수유치원 교사	340	40	32	80	
소 계		11			773	795	103	138
1996	일반연수	18	특수학교(급) 교사	62	1,212	1,189	98	173
	보수교육	2	시각장애학교 이료교사	464	47	43	91	
	직무연수	1	특수학교 서무 책임자	18	88	82	93	
소 계		21			1,347	1,314	98	173
1997	일반연수	13	특수학교(급) 교사	62	1,190	1,364	115	181
	자격연수	1	특수학교 치료교육 교사	182	31	30	97	
	직무연수	4	특수학급 설치교 교장 및 특수학교 서무 책임자	16	386	438	113	
	국외연수	2	특수학교(급) 교사	160	50	50	100	157
소 계		20			1,657	1,882	114	338
1998	일반연수	11	특수학교(급) 교사	60	1,280	1,134	89	149
	자격연수	1	특수학교 초등2급 정교사	180	104	114	110	
	직무연수	4	특수학급 설치교 교장	16	400	361	90	
	국외연수	1	특수학교(급) 교사	120	30	28	93	121
	원격연수	1	일반교사(직무연수)	33	230	197	86	97
소 계		18			2,044	1834	90	367
1999	일반연수	8	특수학교(급)교사 및 통합학급 교사	60	679	599	88	182
	자격연수	2	특수학교(급)·초등2급 정교사 및 치료교육 교사	180	329	305	93	
	직무연수	3	특수학급 설치교 교장 및 특수학교 교육과정 실무자	16	536	646	121	
	국외연수	1	특수학교(급) 교사 및 본원교수요원	120	25	25	100	84
	원격연수	3	일반학교 교사 및 특수학교(급) 교사	30/60	740	629	85	14
소 계		17			2,309	2,204	95	280

연도	종 별	과정수	연 수 대 상	이수시간	계획	실적	%	예산
2000	직무연수Ⅰ(60시간이상)	10	특수학교(급) 교사, 통합학급 교사 교육전문직, 특수학교·특수학급 교감	62	978	840	86	144
	직무연수Ⅱ(60시간미만)	5	특수학급 설치교 교장	16	810	645	80	
	자격연수	2	특수학교(정신지체) 초등 2급 정교사	180	240	207	86	
	국외연수	1						
	원격연수	2	유·초등 일반학교 교사	60	500	291	58	12
소계		20			2,553	2,008	79	243
2001	직무연수Ⅰ(60시간이상)	8	특수학교(급) 교사, 통합학급 교사 교육전문직, 특수학교·특수학급 교감	62	968	839	87	145
	직무연수Ⅱ(60시간미만)	6	초·중등 특수학급 설치교 교장 특수학교 직업교육 담당교사	16	951	865	91	
	자격연수	2	특수학교 초등 2급 정교사 치료교육 준교사 및 2급 정교사	182	270	284	105	
	국외연수	1	해외교포 특수교육 담당교원	482	6	6	100	28
	원격연수	2	유·초·중등 일반학교 교사	62	300	236	79	19
	부모연수	4	장애학생 및 장애인 부모	15	400	648	162	11
소 계		23			2,895	24,167	99	191
2002	직무연수Ⅰ(60시간이상)	9	특수교육 전문직 및 특수학교 교감, 유·초등 특수학교(급)교사, 유·초·중등 통합학급 교사	62	904	818	90	116
	직무연수Ⅱ(60시간미만)	4	초·중등 특수학급 설치교 교장	16	453	407	90	
	자격연수	2	특수학교 초등 2급 정교사	182	183	167	91	
2002	국외연수	1	해외동포 특수교육 담당교원	250	8	8	100	20
	원격연수	2	유·초·중등 일반학교 교사	62	349	377	108	23
	부모연수	2	특수학교(급) 학부모	10	400	522	131	6
소계		20			2,297	2,299	100	165
총계	직무(일반)연수Ⅰ	88			8,183	7,786	95	1,353
	자격연수	13			1,459	1,407	96	
	직무연수Ⅱ	28			3,677	3,496	95	
	보수교육	4			117	103	88	
	국외연수	7			138	136	99	497
	원격연수	10			2,119	1,730	82	165
	부모연수	6			800	1,170	146	17
총 계		156			16,493	15,828	96	17

※ 자료 : 1994 ~ 2002 이수대장, 국립특수교육원

국립특수교육원 청사 이전보다 특수학급 신설과 편의시설 강화에 예산이 우선 투자되어야 한다는데 대한 의견과 이전계획 재검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원은 특수교육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와 학습자료의 개발·보급 및 교원연수 등을 통한 특수교육의 발전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4년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은 개원 당시 국내 특수교육 이해부족 및 여건의 미비로 개원규모 자체가 매우 빈약한 상태로 설립되어 전국 단위 특수교육 연구 및 연수기관으로서 연구실, 연수운영실, 분임토의실, 문헌정보실, 기숙사 등의 시설이 부족하고 안산시 외곽에 위치하여 장애인의 접근에 애로가 많아 특수교육 관련 종사자로부터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우리원의 직제를 확대 개편하고 시설을 현대화하여 특수교육 전문 연구·연수 기능을 강화하고 현장 특수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지원제공을 확대하기 위하여 직제개편 및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신축이전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원 신축 이전은 현장 특수교육의 내실화 및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하며 특히, 최근 장애학생의 통합교육 확대요구 증대에 따라 특수교육의 기회확대는 특수학급 증설 외에 통합교육의 촉진을 위한 일반학교 교원들에 대한 연수기회 확대, 다양한 교수, 학습자료 지원자료 개발·제공 등도 중요한 과제이므로 우리 원의 기능확대와 신축이전이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붙임 : 국립특수교육원의 당면과제

【별첨】

국립특수교육원의 당면 과제

1. 기능 및 조직과 관련한 문제점

□연구·연수·정보운영 등 국립특수교육원 기능의 정상화 필요

○현재 국립특수교육원은 3개과에 교육전문직 19명만이 배치되어 있어 특수학교(급) 등의 교육현장에서 요구하는 자료개발·교원연수·정보자료 지원 등의 요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장애유형별(시각장애·청각장애·정신지체·지체부자유·정서장애·언어장애·학습장애), 학교과정별(유·초·중·고등학교 및 전공과), 교과별 교육과정 운영지원 자료 및 교재· 교구의 개발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나 조직과 인력의 부족으로 현장의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

－특수학교(급) 교원 및 통합교육 담당 일반교원 등 매년 5000명 이상의 교원이 현직연수를 신청하고 있으나 조직과 인력의 부족으로 매년 2000여명(원격부모교육대상자 600여명 포함) 정도에게만 연수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공학 보조도구(assistive technology device)의 개발·보급에 대한 요구가 급격히 증대하고 있으나 기능과 조직의 미비로 요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장애인 교육에 대한 지원은 세계 모든 나라들이 교육복지의 척도로 삼아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분야이나 국립특수교육원의 경우 부지의 협소로 인해 그 효과를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고 있음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및 특수교육 방법개선 요구에 부응할 기능 및 조직 부족

○지식정보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인적자원 개발의 중요성 증대와 교육인적자원부로의 개편에 따른 장애인의 전 생애에 걸친 총체적이고 다양한 평생교육 지원 정책연구와 자료개발이 요구되나 현재 기능과 조직으로는 이러한 요구를 모두 수용할 수 없는 실정임

－장애인 인적자원 개발 요구의 증대는 학령기 교육에 대한 지원만이 아니라 장애인의 전 생애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는 바 국립특수교육원은 현재 학령기 장애학생의 교육요구를 지원하는 데만도 조직과 인력의 한계를 지니고 있음

－장애인에 대한 지원정책은 교육인적자원부·노동부·보건복지부에 분산되어 있지만, 모든 부처들이 학령기 장애학생만을 중복지원하고 있어 많은 장애인들이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장애인 지원정책의 조정방안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나 조직과 인력의 한계로 그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음

－교육인적자원부는 국립특수교육원, 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및 고용개발원,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라는 연구기관을 두어 장애인 지원정책을 연구하고 있으나 노동부의 고용개발원은 고용에 관련된 정책만을 연구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장애인 지원정책보다 국민 전체의 복지정책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어 국립특수교육원만이 장애인 인적자원 개발과 평생교육 지원 정책의 중복·누락 조정정책을 연구·개발할 수 있는 기관이나 조직과 기능의 제한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음

□「장애인교육복지정보센터」의 기능 및 조직 부족

○교육인적자원부·보건복지부·노동부 3개 중앙행정 부처의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 의거하여 장애인 평생교육복지 지원체계 구축 등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관련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는 「장애인교육복지정보센터」를 국립특수교육원에 설치 운영토록 합의(1997. 12. 11)하여 1998년 3월 20일 장애인 교육복지 정보센터가 설치(교육부령 제717호)되었으나 2003년 3월 1일 교육연구관 1명, 교육연구사 1명, 전산주사보 1명 등 3명만이 증원되어 전국 장애인의 교육복지정보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장애학생용 교수-학습자료 개발 보급을 위한 기능 및 조직부족

○장애인용 학습자료나 지원도구 및 공학도구의 개발은 시장성이 부족하여 민간업체에서 개발·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특수교육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바 국가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개발이 어려운 실정에 있으나 국내 유일의 특수교육전문 국가기관인 우리 원의 기능과 조직이 부족하여 일선 교육현장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

2. 시설과 관련한 문제점

□장애인 이용 및 전국 단위 교원 연수기관으로서의 시설 협소

○국립특수교육원은 정부의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정도를 상징하는 기관이나 부지 면적 4280㎡(1295평)에 건축면적이 4992㎡(1510평)에 불과하여 많은 장애인과 국민들로부터 시설이 협소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국립특수교육원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소속기관이나 부지 면적과 건축 면적이 다른 소속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부지 면적 6240평, 건축 면적 3910평)나 국제교육진흥원(부지 면적 2735평, 건물 2891평)의 절반도 되지 않는 형편임

－국립특수교육원은 국립기관이나 대부분의 시·도 교원연수원보다 대지면적과 건축면적이 협소한 형편임(서울교육연수원 부지 면적 1만 6524평, 건축 면적 1만 2437평)

－지난 제238회 임시국회에서 최영희 위원께서는 국립특수교육원의 규모와 위치가 타 직속기관에 비해 외진 곳에 설치된 것은 우리 나라의 장애인 관련 정책의 위상을 말해주는 것으로 지적하면서 장애인 관련 기관의 시설이나 위치가 격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국립특수교육원에서 개설해야 할 연수과정은 많으나 현재 시설로는 방학 중에 자격연수를 포함하여 5기 이상을 개설할 수 없는 실정임

－국립특수교육원에 있는 연수 가능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강당 1개 : 한국선진학교 학생용 기준으로 설비되어 자리가 협소하여 장기연수 시 사용 불편

• 연수실 5개 : 100～120명용 1개, 40～50명용 2개, 20～30명 2개로서 대부분의 연수가 40～50명을 한 반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소규모 연수실은 주로 분임토의실로 활용

• 기숙사 : 3인용 생활실 35개에 105명 수용가능하나 자격연수 대상자 우선 배치로 기타 연수대상 교사에게 기숙 기회를 주지 못하고 있음. 1실 3인 배치를 기본으로 하나 성인이 사용하기에 매우 불편함. 국립특수교육원의 기숙사는 당초 한국선진학교 학생들의 생활훈련관으로 건축된 시설로써 협소한 부지 내에 두 기관이 있음으로 인해 한국선진 학교의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면이 있음

－교사·교장(감)·전문직 자격 연수, 직무연수시 시설 협소 및 부족으로 연수생으로부터 계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2000년 직무6기 연수생 설문결과 원문내용임
－강의실 시설에 대한 의견 : 강의실 의자 및 책상의 협소, 소집단 구성을 통한 강의
－컴퓨터실에 대한 요구 : 컴퓨터 1인 1체제의 지원체제 구축,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 확충
－건물 전체 공간 확대 요구 : 주차공간부족, 휴식공간 부족
－기숙사 관련 : 주말 기숙사 사용 허가. 기숙사에 TV나 신문 등과 같은 정보매체를 층마다 마련하여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 부여. 기숙사이용자 확대. 비합숙자에게도 합숙의 기회부여. 기숙사 방의 크기를 줄여서라도 한사람씩 쓸 수 있었으면 좋겠음. 개인적으로 공부를 할 수 없음. 기숙사 여자 화장실 샤워실이 남자용에 비해 사용량은 많으나 시설 부족

3. 주요 외국 사례

□미국 국립장애·재활연구소(National Institute on Disability and Rehabilitation Research)

연방교육부에 특수교육 정책수립·감독·평가·특수교육 자료개발·보급 및 특수교육 교원연수를 위해 장애연구기관위원회·연구부·학습자료개발부 등의 부서를 두고 159명의 인력을 배치·운영하고 있음

□일본 국립특수교육총합연구소(Nipon Institute for Special Education)

특수교육에 관한 실제적 연구의 종합적 수행과 특수교육 관계직원에 대한 전문적·기술적 연수 등을 위해 운영부 외에 장애영역별 전담부서 및 특수교육정보센터를 두고 84명의 인력을 배치·운영하고 있으며 부속학교 운영 및 지방분원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스웨덴 국립특수교육연구소(National Swedish Agency for Special Education)

특수교육 행·재정 지원, 특수교육 대상학생 및 학교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일반행정부·자문상담부·학습자료개발부 등의 부서를 두고 270명의 인력(분원 포함)을 배치·운영하고 있음

□독일 장애인보조공학 지원센터(Forschung sinstitut Technologie-Behindertenhilfe)

주정부 단위의 장애인보조공학지원센터에서 장애인을 위한 연구, 개발, 상담 등을 위해 개발·연구·실험·보조공학 지원센터 등의 부서를 두고 75명의 인력을 배치·운영하고 있음